「원전 안전분야 (방사능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19. 7.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공무원 지침서)		
	□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등록대상	□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영국네당 여부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예 ☑ 아니오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		
지침서 •	□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예(☞ <mark>지침서</mark>) □ 아니오	
안내서 구분	□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예(☞<mark>안내서</mark>)☑ 아니오	
기타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확인사항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19 년 7월 일		
		무관 박 원 영 장 김 성 곤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및 「원전 안전 분야(방사능누출사고 부분)」에 따라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상황 인지 및 보고·전파, 상황 분석·평가·판단, 조치사항 등 위기대응을 위한 절차·기준·요령과 각종 양식, 보도자료 또는 담화문 예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 목 차 -

I . 일반 사항
1. 목 적
2. 적용 범위15
3. 관련 법규15
4. 용어 정의16
I. 위기 유형와 관리 체계
1. 위기 유형 21
2. 전개 양상 ···································
3. 위기관리 체계
가. 종합체계도 22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23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체계 25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2. 방 침
3. 위기정후 감시 32
가. 위기징후 목록 32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32
4. 위기평가 33
5.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가. 위기경보 수준33
나. 위기경보 절차 34
6. 비상근무체계39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 백색비상
가. 상황
나. 조치사항44
다. 기관별 임무와 역할 45
2. 청색비상
가. 상황46
나. 조치사항
다. 조치내용 47
라. 기관별 임무와 역할50
3. 적색비상
가. 상황 52
나. 조치사항 52
다. 조치내용 53
라. 기관별 임무와 역할57
♡.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1. 백색비상65
2. 청색비상66
3. 적색비상67

Ⅵ. 기관대응수칙

1.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71
2. 식약처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재난대응 프로세스72
3. 관련 부서·부처별 협업기능 ·······74
4. 관계기관 주요 임무(국내원전 방사능 누출)
5. 비상연락망 80
VII. 부 록
1. 방사선비상시 국민 행동요령85
2. 주민보호 및 구호조치 94
3. 방사능에 대한 Q&A(예시) ·······101
4.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107
5.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120
6. 공문서 등 작성(예시)122

<u>제·개 정 이 력</u>

제 목	원전안전(방사능누출) 분야 위기대	ዘ응 실무매뉴얼
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 개정 내용	개정 근거
0 ('15.12)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신규 제정	표준매뉴얼에 따라 실무 매뉴얼 제정
1 ('16.7)	○ 기관대응수칙 추가 ○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비상연락망 등 정비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및 비상연락망 정비
2 ('17.12)	○ 식약처 직제개정 및 정부 직제개정 반영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정 반영 ○ 용어, 기준, 비상연락망 등 현행화 등	식약처 직제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정(문체부)
3 ('18.5)	○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 비상연락망 등 정비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및 비상연락망 정비
4 ('19.7)	○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 사항 반영)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실무매뉴얼 개정 요청 (원자력안전+1원회 방재 환경과-325, '19.03.05)

I. 일반사항

Ⅰ. 일반사항

1 목 적

○ 이 실무 매뉴얼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절차 및 조치 사항을 규정

2 적용 범위

○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에서의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되는 식품 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관련 단체 등의 위기대응 활동에 적용

3 관련 법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5280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
- 원전 안전분야(방사능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2)

구	분	내 용
국가	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	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관리 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비상	상황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
수	결과 수습형	•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
	완만 인행형	•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순간 등폭형	•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비상상황으로 보여지나,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대응력의 한계가 노정되고 실패시 중대재난으로 귀결되는 유형
<u>위기</u> 수	경보 <u>준</u>	 관심(Blue):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관심 경보 단계에서는 징후 감시활동을 하고, 비상연락망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주의(Yellow):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주의 경보단계에서는 관련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을 강화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경계(Orange):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경계 경보 단계에서 주관기관은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준비한다. 심각(Red):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확실시되는 상태를 말한다. 심각 경보 단계에서 주관기관은 관련기관과 함께 관련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위기발생에 즉각적으로대응할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

구 분	내용
위기관리 활동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대응 :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사보타주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통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재산·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
방사능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려는 성질이나 능력으로서, 표준단위는 Bq(베크렐)을 사용. 1Bq는 1초에하나의 핵이 변환 또는 붕괴되는 양 1 Ci(큐리) = 3.7 ¹⁰ Bq
방사선	물질 내에서 원자를 전리시키는 능력이 있는 입자선(알파입자, 베타 입자 등) 또는 전자파(감마선, 엑스선 등)
방사성물질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 등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 ※ 핵연료물질: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방사선비상 계획구역 (EPZ)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옥내대피·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설정하는 구역으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으로 구분
예방적보호 조치구역 (PAZ)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UPZ)	※ EPZ: Emergency Planning Zone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 PAZ: Precautionary Action Zone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 UPZ: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Ⅱ. 위기 유형과 관리 체계

Ⅱ. 위기 유형과 관리 체계

1 위기 유형

가. 재난 원인

- (1) 자연재난, 인적오류 등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 (2) 중요 핵심부품의 결함에 의한 방사능 누출

나. 재난 유형

원전 방사능 누출로 인해 주변지역 가축·식품 오염, 인근 지역주민 방사선 피폭 등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2 전개 양상

- 자연재난, 인적오류 등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 중요 핵심부품의 결함에 의한 방사능 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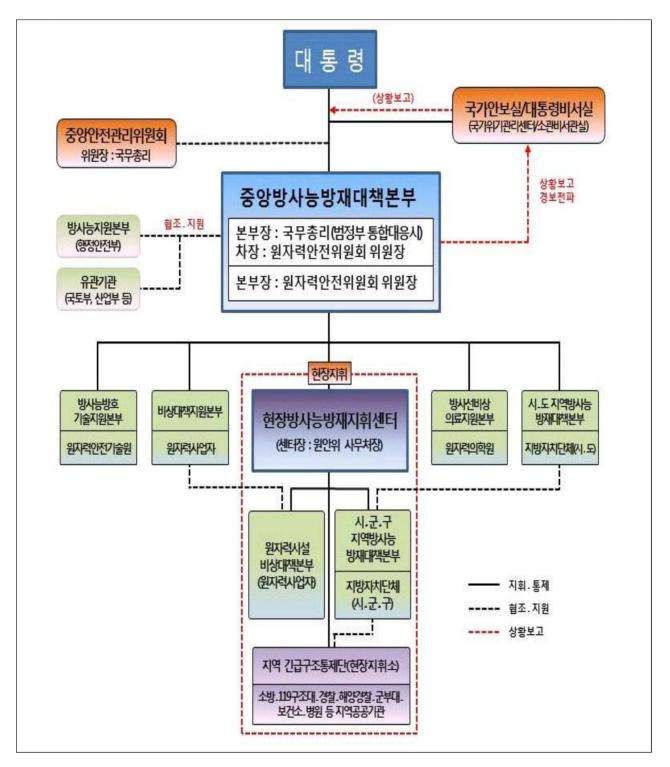
● 원자력시설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



- 발전소 종사자 및 인근지역 주민 방사선 피폭
- 인근지역 농·수산물, 가축 및 취수원 오염
- ♥ 방사성물질의 침적으로 인한 피해확산

3 위기관리 체계

가. 종합체계도



※ 유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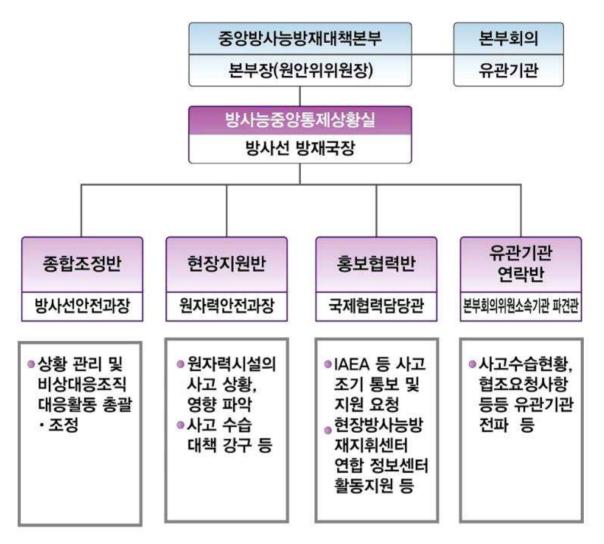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이행 ○ 방사능 재난의 평가 및 발생의 선포 ○ 재난수습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총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본부회의 본부정(원안위위원장) 유관기관 병사등중앙통제성회실 * 본부회의 참석 유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 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유관기관 연락반: 본부회의 위원 소속기관 파견관 등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능재난 현장대응활동 총괄 지휘 ○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위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주관 ○ 시·군·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휘 및 방재요원 임무 부여 중앙청사능방재지회센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 강시센터 합동방사선 비상진료센터 보시능방재대책로부 * 현장방사능방재지회센터 파견 부처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원자력 안전위원회		

구 분	임무와 역할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시·도 및 시·군·구)	o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의 이행 o 지방행정기관과의 행정조치 및 업무 협조 o 긴급구조활동 지휘 및 통제 o 주민보호조치 이행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o 비상대응시설 가동 및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o 사고.복구 현황 보고 o 사고확대 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o 사고영향평가, 주민예상피폭선량평가, 주민보호조치 권고 등 비상대응활동 수행
방사능 방호기술지원본부 (원자력안전기술원)	o 사고해석 및 평가·예측 o 방사선측정, 방사선영향 평가 o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 o 방사선방호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
방사선 비상의료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운영 o 방사선피폭 환자 제염·치료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 지원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조정실)	o 안전관리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o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 o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체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운영



※ 유관기관(연락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인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 지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분		₹ -	주 요 역 할
본		부회의	o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등 의결
		종합 조정반	o 중앙본부장,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에 상황 종합 보고 o 상황정보 종합관리 o 본부회의 운영 o 실무반 역할 조정 및 운영
중앙 방사능 방재 대책 본부	방사능 중앙	현장 지원반	o 원자력시설 사고 상황, 사고예측 결과 종합 o 현장지휘센터 대응활동 및 지원필요사항 종합 검토 o 사고 수습대책 강구
	통제 상황실	홍보 협력반	o 연합정보센터 운영지원 o 재난온라인방송, 재난 문자전송 요청 o IAEA 및 주변국에 사고 정보 제공 및 지원 요청
		유관기관 연락반	o 본부회의 안건 실무 검토 조정 o 본부회의 의결사항 및 협조요청사항 소속 부처 전파 및 이행 종합 o 해당 유관기관 상황정보 공유 및 업무 연락
		합동방재 대책협의회	o 방사능재난 등의 수습과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 자문
		연합정보센터	o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언론대응 총괄
방 사 방	장 사능 재 세디	종합조정반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업무 종합 및 대외기관 창구 o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운영 및 실무반간 업무조정
지휘센터		사고분석반	o 원자력시설 사고 상황 수집 및 분석 o 방사선원항 평가 및 예측
		방사선 평가반	o 현장 방사선영향평가 및 긴급 방호활동 o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현장 활동 총괄.지휘

구 년	란	주 요 역 할
주민보호반		o 주민보호조치와 관련한 현황파악, 종합 및 자료관리
	의료지원반	o 비상의료 대응 관리 및 지원활동 총괄.지휘 o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운영 및 총괄
	운영지원반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장비 운영.관리 등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출입인원.장비의 통제
	합동방사선 감시센터	o 현장 방사선감시 및 평가.분석 o 지역, 기자재, 장비 및 차량에 대한 오염 관리
	합동방사선 비상진료센터	o 현장방사선비상진료 총괄 조정
시·도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o 주민보호조치 이행
시·군·구 지역빙 대책본·		o 주민보호조치 이행
방사능빙 기술지원		o 사고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지원
방사선비상 의료지원본부		o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지원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o 사고 확산방지 및 수습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 가.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원자로의 방사능 누출 사고 예방·대비
- 나. 방사능 누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방재체계 가동

2 방침

- 가. 방사능 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 (1)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상시적 안전점검·검사
- 나.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유관기관 대응시스템 확립
 - (1) 방사능 방재기관의 대응태세 정비
- (2)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사전지정 등 신속 구조・구급체계 사전 구축
- 다.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대응시스템 가동
 - (1)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및 방재 대응시스템 가동
 - (2) 2차 사고에 대비한 대비·대응 활동
- 라. 원전 안전 및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대국민 홍보

3 위기징후 감시

가. 위기징후 목록

위기 형태 (4개)	위기징후 (5개)	감시수단 (9개)	감시방법	조치 (대비ㆍ대응)
1.	1.1 원전 불시정지	○ 한수원 원전 종합 상황실 (24시간 근무)	원전 운전변수 감시조기경보 프로그램을통한 발전소 건전성 확인	○불시정지 대비 대응 태세 가동 ○사고·고장 및 특이징후
원자력 시설	※ 각종 수동 및 자동정지 포함	◦ KINS AtomCARE 시스템	○ 원전 운전변수 감시	발생 시, 초기 상황파악 및 보고(지역사무소)
사고·고장	1.2 각종 검사·점검 과정에서 특이 징후 발견	○일상검사, 특별 검사	○ 검사과정에서 발행된 지적사항표 등	○필요시 사건조사 및 대응조치 (본부·지역사무소 등)
2. 지진	2.1 지진 진동 감지	o 지진감시기 계측값 (기상청, 원전, KINS)	○ 지진감시기 모니터링 ○ 기상청 지진정보 발표	○ 감시 강화, 지진영향 분석 상황대응반 운영
3. 태풍	3.1 태풍 등에 의한 특이징후 발생	○기상청 예보 ○원전 기상감시	○ 기상예보 모니터링 ○ 원전 기상상황 감시	○재난 감시 강화, 사전 대비태세 점검, 상황 대응반 운영 ○특이징후 발생 시,
4. 화재	4.1 방사선관리구역 내 화재발생	○ 화재감시기 ○ 운전원 ○ 외부소방서	○화재감시기 모니터링 ○운전원 현장순시	초기 상황파악 및 보고 (지역사무소) ○필요시 사건조사 및 대응조치 (본부·지역사무소 등)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1) 위기징후 목록에 따른 감시수단과 감시방법 등 징후감시체계를 구축
 - 감시수단이 통계인 경우 통계 생산·관리 체제 마련
 - 타 기관·외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협조체계를 구축
- (2) 위기징후를 징후감시체계를 통해 감시하고, 징후 포착시 그 정보를 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전파·공유
- (3) 위기징후 감시결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공유전파

4 위기평가

- (1) 주관기관은 상황의 심각성·시급성·확대가능성·전개속도·지속시간· 국내외여론 등을 고려하여 위기평가 실시
- (2) 주관기관은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위기평가회의 운영
- (3)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한 위기징후 감시 · 평가결과 대국민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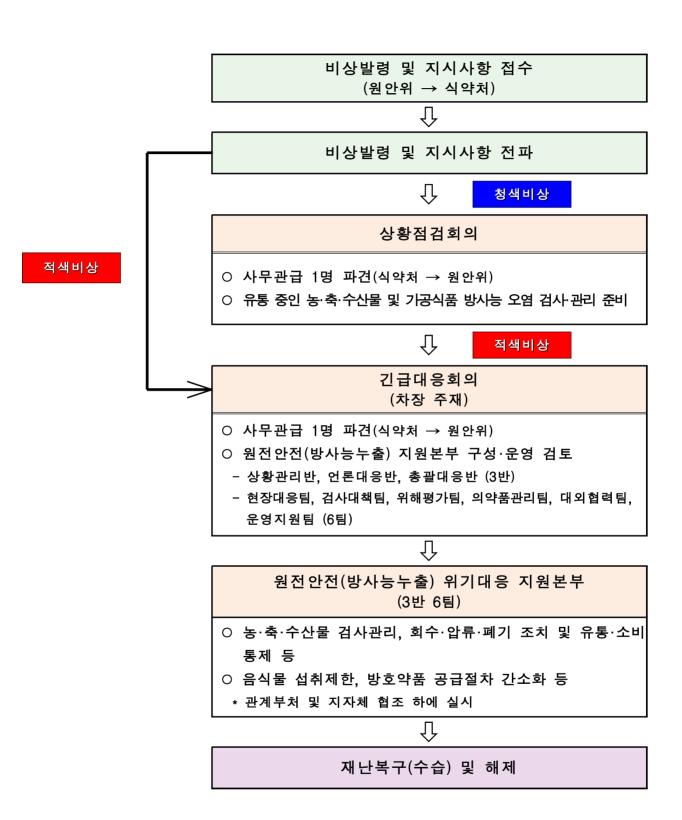
5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가. 위기경보 수준

구 분	방사선 비상단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	o 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운전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징후활동 감시
주의	-	o 방사선비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계통의 경보	협조체계 가동 및
(Yellow)		발생	대비 계획 점검
경계	백색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나타나지	대응태세 점검 및
(Orange)	비상	않지만 안전 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대응체계 가동
심각	<mark>청색비상</mark>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즉각대응조치 시행
(Red)	적색비상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 (방사선비상 이전) 위기경보 수준(관심, 주의)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 (방사선비상 이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규정된 절차 이행

나. 위기경보 절차



비상발령 상황 접수 공유

- (1) 방사선 비상발령 상황 등 지시 접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원안위로부터 방사선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를 접수
 - 전파내용 ① 방사선비상의 종류, 사고 상황, 주요 대응조치 등
 - ②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 소속 중앙부처 연락관 파견 요청
- (2) 비상발령 상황 및 대응조치 지시내용 전파·보고(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위기경보 발령시스템('START-공지사항'및 SMS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상발령*및 지시사항 등 주요정보를 관련 부서장에게 신속 공유
 - \star 인트라넷 START \rightarrow 공지 \rightarrow 글쓰기 \rightarrow 내용입력 \rightarrow 저장
 - 주요 정보사항을 처·차장에게 보고

상황점검회의 구성·운영

(1) 구성

- 차장(주재),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대변인,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소통 협력과장, 위해정보과장, 검사제도과장, 식품안전정책과장, 식품안전 관리과장, 식품기준과장, 농축수산물안전과장, 의약품정책과장, 의약품 관리과장, 관련 부서 과장 등
- * 차장 부재 시 참석자 중 직제 순에 따라 최고 선임자가 회의 주재, 사안에 따라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참석 범위 조정

(2) 운영

 원안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 원안위원장)로부터 청색비상 통보를 받은 경우 차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 개최, 소비자위해예방 정책국장이 참석 범위 조정

(3) 역할

-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관리 준비
 - 대상제품의 종류, 수거·검사 여부 및 범위
 - 원전사고 시 방사능 누출 및 방사능 오염이 예상되는 해당 및 인근 지역의 검사기관 및 검사장비, 시료 등
- ㅇ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조치방안 검토
- 관련 기관 보고·협조
- 대국민 홍보방법 및 시기(원안위 사전협의)
- 원안위 요청 시, 원안위(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연락반)에 식약처 파격자 검토(사무관급 1명을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서 추천)

긴급대응회의 구성·운영

(1) 구성

- 처장(주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기획조정관, 대변인, 소비자위해 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소비안전국장, 의약품안전국장, 식품기준기획관, 식품위해평가부장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식품안전정책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식품 기준과장,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농축수산물정책과장, 농축수산물 안전과장, 의약품정책과장, 위해정보과장, 소통협력과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관련 부서 과장 등

(2) 운영

○ 원안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로부터 적색비상 통보를 받은 경우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처·차장에게 긴급대응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기획조정관·소비자위해예방정책국장이 참석범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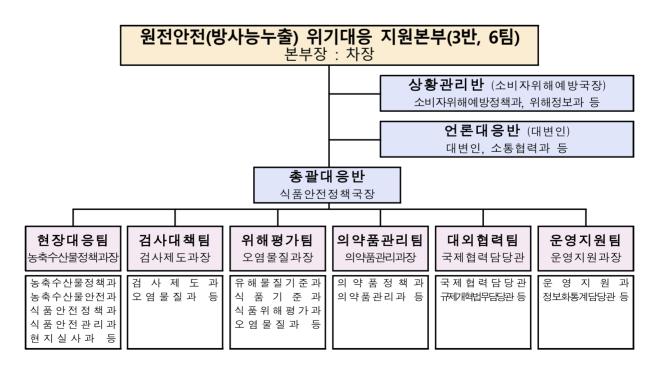
(3) 역할

- ㅇ 정보분석 내용 검토
- 생산, 출하 또는 유통단계 수거·검사 범위 및 검사체계 점검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운영 검토
 - 3개반 6개팀의 역할 검토·부여
 - 필요 시 소속 팀장 및 팀원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
- 대국민 홍보방법 및 시기(원안위 사전협의)
- 원안위 요청 시, 원안위(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연락반)에
 식약처 파견자 검토(긴급대응회의에서 파견자 선정)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1) 구성

- 차장(본부장, 필요시 처장), 본부(평가원 포함) 관련부서 직원(사무관/ 주무관)으로 각 반/팀을 구성하고. 관련과장을 팀장으로 임명
- 상황관리반장은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을, 언론대응반장은 대변인을, 총괄 대응반장은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임명



< 반·팀별 역할(임무) >

구 분		역 할
상황관리반		o 지원본부 내 관련 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 o 원안위와 연락 및 협조체계 유지 o 각 팀별 일일상황보고서 취합 작성 및 보고
언	론대응반	o 언론 및 여론 동향 파악, 보도자료 배포, 상담센터 운영
현장대응팀	현장대응팀	O 사고발생 지역 식품 등에 대한 섭취제한, 유통·소비 통제 시행O 수거·검사 및 부적합식품에 대한 회수·압류·폐기 총괄O 일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
	검사대책팀	o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기관 업무 조정·관리
총괄 대응반	위해평가팀	o 검사결과 분석·확인 및 위해평가 o 섭취제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 검토
	의약품관리팀	o 방사선 방호약품 국내 생산 및 수입현황 확인 o 방사선 방호약품 공급절차 간소화, 사용정보 제공 등
	대외협력팀	o 국내 관련부처 및 제외국 정부기관 등 협력 업무 o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
운영지원팀		o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
지방청 및 지자체		o 사고발생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 피해 현황 파악 o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 회수·압류·폐기 업무 지원

(2)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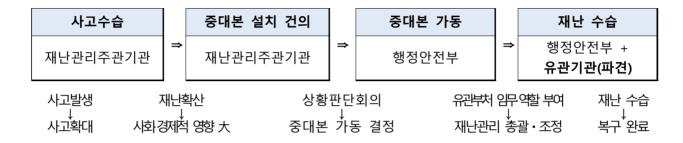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동 지원본부 조직을 축소 또는 확대하여 운영 가능
 - 소속 팀장 및 팀원은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서 총괄대응반장과 협의하여 운영지원과에 인사발령 요청(필요시)
- 일일상황보고 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체계적 대응
 - 위기 종결 시까지 '일일 지원본부 회의' 개최
 - 각 팀별로 당일 16:00까지 일일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상황관리반은 이를 취합하여 전체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 처·차장 및 원안위에 이행 현황 및 결과 등 주요내용 보고

재난복구 및 해제

원안위에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방사능재난 수습현황, 재난 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방사능재난 해제

6 비상근무체계

-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파견 근무
 - (파견시기)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주관기관 또는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요청 시, 식약처 파견자 선정(총괄대응반장이 관련업무 수행 사무관급 1명 추천)



- (파견인원) 사무관급 1명 / 24시간 3교대
 - * 필요시 재난규모, 확산 가능성 등 재난양상에 따라 추가로 파견
- (주요임무) 부처별 재난수습상황 및 지원·협력 필요사항 파악 및 조치
 -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수습상황, 필요사항 파악 및 조치
 - 수습상황보고서 등 각종 자료 입수, 피해현황·조치상황 파악 보고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수습상황 파악 보고 및 조치사항 전파 등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 백색비상

가. 상황

ᢧ 개 요

0000년 00월 00일, 00원전 0호기가 안전주입계통 주입배관의 소규모 누설로 냉각재가 00 누출됨(백색비상 발령조건 이상)

*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개략적 내용 기술

ᢧ 세부 내용

○ 위기정보 입수 : 0000년 00월 00일 00:00

○ 장소: 00 원자력발전소 0호기

• 사고개요 : 00 원전 0호기 사고 진행에 대한 개요 기술

○ 피해상황 : 사상자 0명, 방사선피폭환자 00명

○ 원자력사업자의 대응활동 현황

○ 기타 : 특이사항

나. 조치사항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상황확인	O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백색비상 발령 확인 - 방사선비상 종류, 사고 상황, 주요 대응조치 등	o 소비자위해 예방정책과
조치절차	 이 위기경보 발령시스템('START-공지사항'및 SMS 문자메시지)을 통해 비상발령 및 지시사항 등 주요정보를 국·부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 신속 공유 이 원안위 관련 정보 확인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시 상황점검회의 개최 요청 	o 소비자위해 예방정책과 o 위해정보과
대응조치	 ○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 농·수·축산물 생산현황 파악, 검체 채취 장비 현황, 시험법 현황 등 검토 -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 파악 - 집단급식소 현황 파악 -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여론동향 파악 - 방사능 오염 검사 가능 시험검사기관 현황 파악 - 방사능 독성자료 등 위해평가 자료 검토 - 시험법 검토 ○ 관할 지자체 대응현황 정보 수집 및 보고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에 일일상황보고(필요시) 	O 농축수신물안전과 O 식품안전관리과 O 식중독예방과 O 대변인실 O 검사제도과 O 유해물질기준과 O 평가원 O 지방청

다. 기관별 임무와 역할

구 분	내 용		
징후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안전 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상황 발생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o 위기정보·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비상발령보고, 상황 전파 o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및 예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o 유관기관 초기 비상대응조직 발족 및 상황 관리 지시 o 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연합정보센터 대응활동 지원 o 현장지휘센터 파견요원 긴급이송 헬기지원 "준비" 요청		
행정안전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국방부	실지바다드바레지하네다 이이하거 미 고조 바다드카나르		
경찰청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 원안위가 백색단계에서 준비요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o 예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상황실, 연합정보센터) 발족.운영 o 비상상황 파악, 관계기관 통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o 소내 비상대응시설 운영(연구원 :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o 사고 확대 방지 및 원인 조사 o 시설 내외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예비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운영 o 전문가단 현장 파견 o 환경방사능감시 활동 강화 o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AtomCARE) 운영 확대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o 핵물질의 운반에 대한 방호조치 강화		
한국원자력 의학원	o 예비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운영 o 의료지원반 및 현장의료지원단 현장 파견 준비		

2 청색비상

가. 상황

≫ 개 요

0000년 00월 00일, 00원전 0호기 냉각재 누설사고로 작업종사자의 급성 방사선장해(1 Gv 이상 피폭) 발생(청색비상 발령조건 이상)

*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개략적 내용 기술

ᢧ 세부 내용

○ 위기정보 입수 : 0000년 00월 00일 00:00

○ 장소 : 00 원자력발전소 0호기

○ 사고개요 : 00 원전 0호기 고장 사고 진행에 대한 개요 기술

○ 원자력사업자의 대응활동 현황

○ 기타 : 특이사항

나. 조치사항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상황접수 및 보고	 ○ 방사선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원안위 → 식약처) - 방사선비상 종류, 사고 상황, 주요 대응조치 등 - 중앙부처 연락관 파견요청 ○ 원안위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및 점검 	o 소비자위해 예방정책과
	O 원안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원안위원장) 회의 개최 시 참석	o 처장
대응조치	 O 상황점검회의 개최 청색비상 통보 및 비상대응활동 지시 접수 시 즉시 일일 상황점검회의 개최 원안위(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반) 파견자 검토 유통단계 수거·검사 범위 및 검사체계 점검 부서별 조치사항 검토 및 일일상황보고 	o 소비자위해 예 방정 책 과/ 관련부서
	o 원안위에 관련 정보 확인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o 위해정보과
	o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o 관련 부서

다. 조치 내용

①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ㅇ 방사선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
 - 원안위(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로부터 방사선비상(청색)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을 유선 또는 문서로 접수
 - 위기경보 발령시스템('START-공지사항' 및 SMS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비상발령* 및 지시사항 등 주요정보를 관련 부서장에게 신속 공유
 - * 인트라넷 START \rightarrow 공지 \rightarrow 글쓰기 \rightarrow 내용입력 \rightarrow 저장
 - ※ 원전 고장 일시, 장소, 원인, 우리처 조치사항 등
 - 처·차장에게 원안위 동향 및 식약처 부서별 조치 현황 등 일일상황 보고
- ㅇ 사업부서 조치내역 확인
 - 위해정보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식품안전관리과, 지방청 등 사업부서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일일 점검
- 원안위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및 점검
 - 관계부처 비상연락망 점검 및 부처별 대응 현황 파악
 - 식약처 조치사항 및 협조사항(식약처 사무관급 1명 파견 등) 파악·보고

유관 기관	담당 부서	연락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9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83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

② 위해정보과

- 원안위 등에 원전고장 관련 정보 확인
 - 원전고장에 대한 조치현황 및 방사능누출 가능성 여부 등 확인
- ㅇ 언론보도 동향 파악 및 인터넷 기사 등 지속 모니터링
- 원전고장 관련 정보 및 언론 동향 등을 처·차장에게 보고

③ 식품기준기획관(유해물질기준과)

o 적용 기준 및 시험법 확인·공개

<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 >

방사성 핵종		육류,어류,곡물 (Bq/kg)	야채, 과일 (Bq/kg)	물, 우유 (Bq/L)	유아식품 (Bq/kg)
1군	¹³⁴ Cs, ¹³⁷ Cs, ¹⁰³ Ru, ¹⁰⁶ Ru, ⁸⁹ Sr	2,000	1,000	200	100
2군	¹³¹ I, ⁹⁰ Sr	1,000	500	100	10
3군	²³⁵ U, ²³⁸ U	100	100	20	10
4군	²⁴¹ Am, ²³⁸ Pu, ²³⁹ Pu, ²⁴⁰ Pu, ²⁴² Pu	10	10	10	1
5군	³ H			100 kBq/L	

※ 근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적용 기준 및 시험법을 식약처 모든 부서,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 민간시험검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

④ 농축수산물안전과

- 고장발생 원전 인근지역의 농·수산물의 재배·양식 현황 파악
 - 재배지·양식장 위치, 재배·양식 품목 현황 등을 확인
 - ※ 해당지역 관할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지자체, 농식품부, 해수부 등에 확인
- ㅇ 수거 대비 준비사항 파악
 - 수거증, 검사의뢰서 및 인수인계서, 현장 비상연락망(부록 참조)
 - 수거봉투 및 봉인지
 - 수거량 : 매 건당 1 kg 이상 검체 채취(식품공전 참조)
 -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에 수거내역 입력
 - 시험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LIMS에 입력 관리
 - 수거식별 깃발, 농작물 채취기구(낫, 호미, 칼 등), 사진기
 - 개인보호 장비(실험복,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 및 구급약품 등
 - 관련 시험법 및 보유 시험장비 등 수거검사 인프라 확인·확보 (검사제도과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협의)

- 원전 고장발생 인근지역의 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 현황 파악
 - 사육 가축 종류·두수 및 도축장,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수, 위치, 품목 등 현황 파악
 -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www.lpsms.go.kr)을 활용, 필요 시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지자체에 확인

⑤ 식품안전관리과 및 식중독예방과

- 원전 고장발생 인근지역의 식품 제조·가공업체 수, 위치, 품목 및 집단 급식소 수, 위치, 급식인원, 지하수 사용 여부 등 현황 파악
 - ※ 식의약행정시스템(행정망, http://neoportal.mfds.go.kr)의 인허가 대장 활용, 필요시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청 농축수산물안전과, 지자체에 확인

⑥ 대변인실

- ㅇ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및 여론동향 파악 등
 - 원전 고장 관련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기자회견 등 원안위(연합 정보센터)에서 언론대응 일원화

⑦ 소통협력과

○ 위해소통 민관협의회(산·학·관) 운영 검토

⑧ 검사제도과

- 방사능 오염 검사 가능 시험검사기관·시험장비 현황 파악
 - 지방청,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 지정 민간검사기관 등

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과, 오염물질과 등)

- ㅇ 방사능 독성자료 등 위해평가 자료 검토
 - 국내·외 연구논문 및 외국 정부기관 문서 등 자료 검색 및 확인
- 식품 중 방사능 물질 검사를 위한 시험법 검토(유해물질기준과 협의)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11년)로 인한 수입식품 검사 시험법 등 준용

① 지방청

- 원전고장 발생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현황 파악 협조
 - 현황 파악 결과를 본부(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식품 안전관리과)에 즉시 보고

라. 기관별 임무와 역할

구 분	내 용
징 후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상황 발생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o 정부 대응방향 제시 o 비상대책 시행 등 범정부 대응활동 조정 o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o 상황 대응 총괄 조정 및 현장 대응활동 지휘·통제 o 유관기관 상황 전파 및 협조 요청 o 연합정보센터를 통한 언론대응 일원화 및 재난방송 협조 요청 o 안전취약계층 사전소개 건의 검토·결정
유관기관 (공통)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실무반 인원 파견 - (해당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 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실무반 인원 파견 - (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 교통부, 해양수산부, 해당지역 군부대·경찰청·교육청·기상청·해경서·소방서, 지자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 의학원, 원자력사업자 등 * 단, 현장지휘센터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실무반 신축 편성
방송통신 위원회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o 원자력 연구기관 인력·장비 활용 지원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o 연구용원자로 복구 지원
교육부 (교육청 포함)	o 구호시설(학교) 지정·운영 관련 협조·지원 o 학생 대피 관련 협조·지원
외교부	o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교환 지원 o 외국인 사상자 발생 시 관련상황 전달
국방부 (군부대 포함)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행정안전부	o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o 방사능지원본부 운영(필요시)

구 분	내 용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o 지자체 방사선비상 경보방송 지원
	(비상경보방송시설・민방위방송 활용)
	o 재난온라인방송 및 재난문자전송지원(원안위 요청시)
	o 언론 대응활동 지원
	o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혼란 대응
	o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ᅵ ᄭᄄᆝᆂᄭᅜᆑᆖ	o 원전시설 복구 지원(소외전원 복구 관련 한국전력 협조·지원 포함)
	o 공산품에 대한 방사선오염 검사 관리 준비
	ο 필요시 현장응급의료 지원 등
	o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준비
	o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 관련사항 지원
	o 위기대응 관련 중장비 지원
	o 해당지역 항공기 운항 통제 준비
	o 국내 생산(유통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식품의약품안전처	o 유통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 트이사한 간사 되어오지
	o 특이상황 감시, 치안유지
거산전	o 교통·출입통제 준비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o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정보 제공 준비
기실실	o 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항공기 등) 준비
	o 해당지역 어로행위 및 선박 운항 통제 준비
I OHOFMAN	o 해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경비정 등) 준비
	0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o 방사선 감시활동 지원 및 협조
	0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o 구호소 주민 불안 감소를 위한 실시간위성중계(SNG) 차량 지원 준비
	o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확대.운영
지방자치단체	o 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o 안전취약계층 사전소개 검토·건의
	o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하구워자려여구위	o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o 사고확대방지, 원인 조사, 제염활동 및 응급조치
	o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운영(원전의 경우)
아저기수위	o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현장기술지원단 파견
	o 환경방사능 감시 지원
한국원자력	o 상황에 따라 핵물질 운반제한 유도
동세기물원	
ᅵᅠ야구원사터이야원	o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운영
	o 의료지원반 및 현장의료지원단 현장 파견

3 적색비상

가. 상황

ᢧ 개 요

0000년 00월 00일, 00원전 0호기에 중대한 노심손상이 발생하고 방사능누출로 종사자가 치사량(5 Gy)이상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 *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개략적 내용 기술

ᢧ 세부 내용

○ 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 장소 : 00 원자력 발전소(지역 이름)

○ 피해 : 피해 내용 기술

○ 방사능 누출정보

- 누출 핵종 및 누출량 : 0000- 확산 예상지역 및 거리 : 0000

- 금후 누출 예상량 : 0000

≫ 기 타

기상 상태: 0000기술적 내용: 0000언론보도 내용: 0000

나. 조치사항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상황접수 및 보고	 ○ 방사선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원안위 → 식약처) - 방사선비상 종류, 사고 상황, 주요 대응조치 등 - 중앙부처 연락관 파견요청 ○ 원안위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및 점검 	o 소비자위해 예방정책과
대응조치	O 원안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 원안위원장) 회의 개최 시 참석 O 긴급대응회의 개최 - 원안위(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유관기관 연락반) 파견자 검토 - 부서별 조치사항 검토 및 일일상황보고 O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운영 O 원안위에 관련 정보 확인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O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O 처장O 소비자위해 예방정책과O 관련 부서O 위해정보과O 관련 부서O 관련 부서

다. 조치 내용

■ 긴급대응회의 개최

- 0 회의 개최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로부터 적색비상 통보 및 비상대응활동 지시 접수 시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이 처·차장에게 건의
 - * 필요한 경우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긴급대응회의 개최여부 결정
- ㅇ 참석대상
 - 차장(주재, 필요시 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기획조정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안전정책국장,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 소비안전국장, 의약품안전국장, 식품기준기획관, 식품위해평가부장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식품안전정책과장, 식품안전관리과장, 식품 기준과장,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농축수산물정책과장, 농축수산물 안전과장, 의약품정책과장, 위해정보과장, 소통협력과장,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비상안전담당관 등
- 논의사항
 - 상황점검회의 결과 공유 및 식약처 대응방침 결정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운영 검토
 - · 총괄대응반장 지명 및 각 반/팀의 역할 검토·부여 등
 - 원안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식약처 파견자 검토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팀별 세부 조치사항

① 상황관리반

- 지원본부 내 관련 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
 - 팀 간의 업무조정 역할 및 팀별 조치내역을 매일 진행사항 점검 등 총괄 상황관리

- ㅇ 원안위와 연락 및 협조체계 유지
 - 원안위에 지시사항에 따른 이행현황 및 결과 등 상황보고(매일 오전 9시, 유선 또는 이메일 보고)
 - * 당일 상황보고 내용은 사전에 처ㆍ차장에게 보고
 - 원안위에 식약처 사무관급 1명 파견(긴급대응회의에서 결정)
- ㅇ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 등 소통
 - 방사능 오염 상황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국민 보호조치 및 소비자 행동요령 등 신속 제공·전파를 통해 국민 불안감 확산 차단
 -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개최를 통한 정보 교류 및 이해 제고
 - 언론과 접촉이 가능한 전문가에게 미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과도한 국민 불안감 해소
- ㅇ 각 팀별 일일상황보고서 취합 작성 및 보고
 - 조치결과, 주요부처·여론 동향 등을 처·차장에게 보고(오후 5시)

② 언론대응반

- 언론 및 여론 동향 파악, 보도자료 배포
 - 주요 일간지, 인터넷 뉴스 등을 실시간 검색하여 특이사항 등을 처·차장에게 보고
 - 식품 구입요령·섭취방법 등 방사능 관련 보도자료 작성·배포

③ 현장대응팀

- 사고발생 지역 식품 등에 대한 섭취제한, 유통·소비 통제 시행
 - * 원안위로부터 통보받은 방사능 재난 긴급대응조치구역에 대하여 음식물 섭취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타 지역은 식품위생법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농·축·수산물) 유통·판매·금지 조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유관기관 실무협의체(46개 기관, 120명) 가동
 - · 사고발생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출하제한 요청(농식품부, 해수부)

- (가공식품 등)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사고발생 지역 농산물 등의 식품 워료 사용 금지
 - · 시설·장비의 충분한 세척 등 위생관리 및 지하수 사용업체 대상 수질검사 철저 지시
 -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지하수 사용금지 조치
 - · 방사능 오염 식품 또는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 등을 발견 시 신속히 폐기하고 신고하도록 홍보
- (집단급식소) 사고발생 지역의 집단급식소 등에 급식 식재료 안전 관리 등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지시
-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에 대한 회수·압류·폐기 총괄
 - (사전답사팀 구성) 사고현장의 농작물 등 피해상황 사전 파악
 - · 원안위와 수거 지역·품목·인력의 현장 출입가능 여부 등 협의
 - · '사전답사팀'(본부 5급 1인, 관할지방청 1인)은 피해현장 확인 및 농산물 등 방사능 오염 정도, 투입 필요인력, 피해지역 지형 등 기초자료를 현장대응팀장에게 보고
 - (수거·검사) 현장대응팀장은 사전답사 내용 등 반영한 농산물 등 수거· 검사 계획(안) 수립 및 총괄대응반장, 처·차장에게 보고
 - ·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식약처, 농식품부 및 지자체 인력으로 수거조 구성(예: 3인 1조), 사전 집합교육(검체채취 방법, 주의사항등) 실시
 - · 방사능 오염 통제 인접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농식품부, 해수부) 및 동 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 수거·검사
 - * 필요시 오염지역 유통 농·축·수산물 원산지 조사(농식품부, 해수부 협조)
 - · 오염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다소비식품 위주)
 - · 지하수 사용 시 방사능 오염 수준 검사
 - ·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압류· 페기 지시 통보

- 일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
 - 본부 행정동 3층에 위치한 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일 수거· 검사 현황 관리
 - 사고현장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집단급식소 등 현황 파악 및 수거 인력 협조 요청,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요청 등 지방청 및 지자체의 지시사항 점검·관리

④ 검사대책팀

-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기관 업무 조정·관리
 - 방사능 오염식품 검사 가능 시험검사기관 현황 파악
 - 시험검사기관별 보유 장비, 검사인력 등 고려하여 검사업무량 배정
 - * 필요시 방사능 검사가 가능한 민간 시험검사기관도 활용
 - 수거 검체의 검사 결과를 현장대응팀에 신속 통보여부 확인 등 시험 검사기관 검사현황 관리

⑤ 위해평가팀

- 검사결과 분석·확인 및 위해평가
 - 검사결과에 대한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 하여 위해평가 결과를 현장대응팀에 보고
- 시험검사기관 대상 검사법 교육 등 기술지원
 - '현장검사지원반'을 구성하여 지방청, 보건환경연구원, 기타 지정된 방사능물질 검사기관 등 순회 지원

⑥ 의약품관리팀

- ㅇ 방사선 방호약품 국내 생산 및 수입현황 확인
 - 오염환자 수에 따른 방호약품 소요량 파악 등
- 방사선 방호약품 공급절차 간소화, 사용정보 제공 등
 - 해외 도매상 또는 제조사에 신속공급 주문 등
 - 식약처 홈페이지, 블로그 및 SNS 온라인 홍보 등

⑦ 대외협력팀

- ㅇ 국내 관련부처 및 제외국 정부기관 등 협력업무
 - 국내 제조·생산 식품의 수출 제한 등 통상마찰 해결 등
- ㅇ 관련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
 -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고시 등 법적근거 검토 및 법제업무 등 관련 지원
- ㅇ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 콜센터 운영, 소비자(국민) 질의·상담응답(Q&A) 및 교육 등

⑧ 운영지원팀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업무지원 인력, 컴퓨터, 사무용품 등 지원

⑨ 지방청 및 지자체

- 사고발생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 피해 현황 파악
 - 농·축·수산물 재배·생산 현황,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등 통계 자료를 현장대응팀에 보고
-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 회수·압류·폐기 업무지원
 - 수거 필요인력 지원, 방사능물질 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 등
 - 현장대응팀에서 회수·압류·폐기 요청을 통보한 즉시 이행

라. 기관별 임무와 역할

구 분	내 용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구 분	내 용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o 관련 동향 확인·평가 및 부처별 대응방안 협의·조정 o 방사능 누출 사고에 따른 재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사항 심의 o 정부 대응활동 협의·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방재 대책본부)	 ○ 방사능 재난 총괄 조정 및 현장대응 활동 지휘・통제 ○ 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체계 운영 ○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 방사능 재난 발생 선포(선포기준 해당 시) ※ 방사능 재난 발생 선포를 결정할 경우 지체없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의 언론대응 활동 지원 ○ 필요시 중앙정부 차원의 언론 대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 언론.홍보 적절성 지속 검토 및 유관부처와 협의 ※ 대국민 홍보, 오보 대응 등 ○ 언론대응 및 정확한 정보전파 등 대국민 정보제공 ○ 장기 상황 관리 방안 수립 ○ 방사능방호 관련 유관부처 기술지원 및 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o 현장방재 대응조직 총괄 o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 방호조치 o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자문을 받아 주민보호조치 등 주요 의사 결정 및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시행 지시 -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지역 주민에 대한 즉시 소개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지역 등에 대한 긴급주민보호조치 (대피, 소개, 음식물섭취제한,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등) - 식료품, 음료품, 농산물 반출 및 소비 통제 - 위험(경계)구역 설정 및 통행 제한 등 o 對언론 창구인 연합정보센터 운영 강화 - 보도자료 배포(언론책임자가 수행) - 정기상황 발표(연합정보센터장) ※ 사고상황의 변동 내용과 대응활동 내용 주기적 제공 - 기자회견			
방송통신위원회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기획재정부	o 사고수습에 필요한 특별예산 지원			

구 분	내 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원자력연구기관 활용 인력.장비 및 상황 분석 지원 o 국내.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o 연구용원자로 사고수습 및 시설복구 지원
교육부	o 구호시설 지정 협조 및 조정 o 피해예상지역 학생 대피 지원 o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학사일정 조정 등 o 학교.연구기관 등의 언론대응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외교부	o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교환 o 국내 외국 대사관에 대한 사고 상황 통보 o 외국의 지원 협조에 대한 정부 대응 창구 운영 o 외국인 사상자 발생 시 관련상황 전달
국방부	o 주민 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군, 예비군)/장비 지원 o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o 방사능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행정안전부	 ○ 지자체 관련부서 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 방사능지원본부 운영(필요시) ○ 피해지역 인력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원 -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재난상황 전파(재난온라인방송, 재난문자전송 등) - 피해수습 전문인력 파견(특수재난협력관실, 민간전문가 등) - 방사능 오염지역(지자체) 동향 및 오염수습상황 관리 ○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대응활동 지원 - 주민대피를 위한 긴급이송 차량・선박・헬기 등 투입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구호물품 등 재난구호물자 수급 등
문화체육관광부	o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발생 내용 발표 지원 o 언론인터뷰가이드 제공 등 언론 대응활동 지원 o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혼란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o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호 조치 o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통제
산업통상자원부	o 원전사업자의 사고수습 및 시설복구 지원 o 전력 수급지원 o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구 분	내 용
보건복지부	o 필요시 현장응급의료 지원 등 o 지역 안정화를 위한 지역 주민 심리 개입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현장 파견 지원
환경부	o 방사능오염에 의한 급수 중단 대비 비상급수체계 확보 o 환경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o 먹는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국토교통부	o 오염제거를 위한 중장비 지원 o 필요시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o 공항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o 피해 지역 항공기 운항 제한 등
해양수산부	o 항만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o 어항 및 수산시설보호 o 피해지역 생산 수산물(유통전)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출하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o 피해 지역의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섭취제한 및 유통.소비 통제
경찰청	o 지역본부와 협력하여 주민보호조치 지원 및 주민통제 수행 - 주변지역에 대한 특이상황 감시, 치안유지 활동 . 주민소개 지역에서의 재산보호 . 소개 지역내 출입 제한조치 - 대규모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동원 . 경찰은 주민의 소개 이동에 따른 교통통제를 실시 . 이동경로 할당과 출발일정 조정 . 이동 중 고장 또는 사고차량의 처리
기상청	o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정보 제공 o 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고정익 등)
해양경찰청	o 사고지역 해역에 대한 어로 금지, 선박운항 통제 o 특수구조대(해양) 가동 긴급구조(필요시) o 해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경비정 등)
소방청	o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o 특수구조대(119) 가동/ 인명 구조, 긴급 수송 o 방사성 오염 시설 제염/ 방사선 감시활동 지원 및 협조 o 구호소 주민 불안 감소를 위한 실시간위성중계(SNG) 차량 지원
광역단체 (시.도)	o 상황실 운영 및 상황 전파 o 민방위대 동원령 선포 o 주민소개 범위·방법 설정 및 수송대책 강구

구 분	내 용
	o 오염지역 출입 통제를 위한 유관기관(군.경) 협조 요청 o 유관기관 긴급 구조.구난 협조요청 o 유관기관 의료지원, 인명구조 및 후송 등 협조요청 o 국토교통부・경찰 등 교통대책 협조요청 o 시.도 단위 유관기관 협조요청 o 광역 주민보호조치 필요시 광역 차원의 구호소 운영 및 관할 시.군.구 지원 o 장기 주민보호조치 계획 수립.시행 o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지원(광역지자체 소방본부) 등
기초단체 (시.군.구)	○ 상황실 운영 및 상황 전파 ○ 동원 민방위대원 임무 부여 ○ 주민소개 유도요원 배치 및 주민소개 조치 ○ 이재민 수용・구호 ○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 조치 ○ 긴급 구조.구난 활동(유관기관 합동) ○ 출입통제소 및 교통통제소 설치.운용 ○ 시.군구 단위 유관기관 협조요청 ○ 지역대책본부에 피해접수 센터 설치 등 - 실종자 및 사상자 파악, 관련 정보 제공 등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사고 정보수집 - 운전상황 보고자료・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AtomCARE) 시스템 정보, 환경 방사선 감시 결과 o 사고 해석 - 사고원인, 사고정도・진행과정 예측 - 방사선 영향・환경 영향 o 평가 종합 - 방사성 물질 방출여부, 사고 수습대책 강구 - 시설의 위험도 평가 o 수습 및 안전대책 강구 o 방사선 관련 대국민 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 및 홈페이지 운영 o 방사선방호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
한국원자력의학원	o 사고 정보 수집 - 피폭환자 발생 예상 규모 등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가동 - 전국방사선비상진료기관 대응태세 유지 o 국민 심리안정화를 위한 상담 전용 전화 및 홈페이지 운영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o 비상대책본부 지속 가동 o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내 환경방사능 지속 감시 o 사고수습, 원인 조사, 제염활동 및 응급조치

♡.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Ⅴ.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1 백색비상

■ 평상시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에 관심·주의

구 분	조 치 사 항
소비자위해 예 방정책과	o 방사능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 o 상황점검회의 개최(필요시) 및 사업부서 조치내역 확인/점검 o 원안위와 연락체계 유지 및 점검
위해정보과	o 원안위에 관련 정보 확인 o 관련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	o 적용 기준 및 시험법 확인·공개
농축수산물안전과	o 농·축·수산물 생산 현황 파악 o 검체 채취 장비 현황 검토
식 품 안전 관리 과	o 식품 제조·가공 업체 현황 파악
식중독예방과	o 집단급식소 현황 파악
대변인실	o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및 여론동향 파악
소통협력과	o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 검토
검사제도과	o 방사능 오염 검사 가능 시험검사기관 현황 파악
평가원	o 방사능 독성자료 등 위해평가 자료 검토 o 시험법 검토
지 방청	o 농·축·수산물 재배 현황 및 가공식품 제조업체 현황 파악 협조 o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현황 정보 수집 및 보고

2 청색비상

■ 평상시 업무체계를 유지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를 대비

구 분	조 치 사 항
소비자위해 예 방정책과	O 방사능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 O 상황점검회의 개최(필요시) 및 사업부서 조치내역 확인/점검 O 원안위와 연락체계 유지 및 점검
위해정보과	o 원안위에 관련 정보 확인 o 관련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	o 적용 기준 및 시험법 확인·공개
농축수산물안전과	o 농·축·수산물 생산 현황 파악 o 검체 채취 장비 현황 검토
식품안전관리과	o 식품 제조·가공 업체 현황 파악
식중독예방과	o 집단급식소 현황 파악
대변인실	o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및 여론동향 파악
소통협력과	o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 검토
검사제도과	o 방사능 오염 검사 가능 시험검사기관 현황 파악
평가원	o 방사능 독성자료 등 위해평가 자료 검토 o 시험법 검토
지 방청	O 농·축·수산물 재배 현황 및 가공식품 제조업체 현황 파악 협조 O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현황 정보 수집 및 보고

3 적색비상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에서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응

	구 분	조치 사항		
소비자위해 예 방정책과		O 방사능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 O 긴급대응회의 개최 및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구성·운영		
상황관리반		 O 지원본부 내 관련 팀 업무 진행상황 관리 O 원안위와 연락 및 협조체계 유지 O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 O 각 팀별 일일상황보고서 취합 작성 및 보고 		
언	론대응반	o 언론 및 여론 동향 파악, 보도자료 배포		
	현장대응팀	O 사고발생 지역 식품 등에 대한 섭취제한, 유통·소비 통제 시한 수거·검사 및 부적합식품에 대한 회수·압류·폐기 총괄 O 일일 상황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방청, 시·도 총괄관리		
	검사대책팀	o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기관 업무 조정·관리		
총괄	위해평가팀	o 검사결과 분석·확인 및 위해평가 o 시험검사기관 대상 검사법 교육 등 기술지원		
대응반	의약품관리팀	o 방사선 방호약품 국내 생산 및 수입현황 확인 o 방사선 방호약품 공급절차 간소화, 사용정보 제공 등		
	대외협력팀	o 국내 관련부처 및 제외국 정부기관 등 협력 업무 o 관련 법령 검토,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 o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운영지원팀	o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인력·물자 지원		
지방청 및 지자체		o 사고발생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 피해 현황 파악 o 수거·검사 및 부적합 식품 회수·압류·폐기 업무 지원		

Ⅵ. 기관대응수칙

기관대응수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유형: 원전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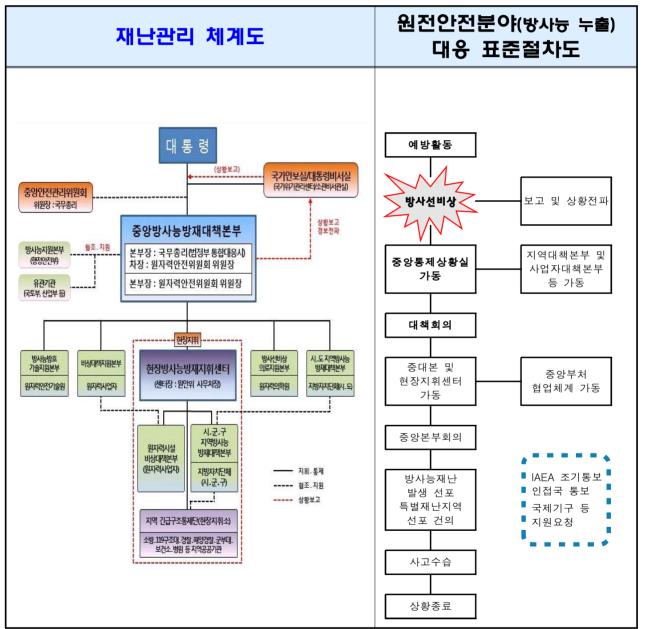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매뉴얼 ○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원전안전 분야」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 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 경찰청, 소방청

I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5조제1항 및 제26조

Ⅲ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재난대응 프로세스

구 분

초기

대응

부서

청색 비상

상황점수 및 보고·전파

초기대응

해 정보 과

НΙ 자 위 해 예

방정책 과

처장

차장

• 초기 추진상황 확인 - 상황판단회의 결과 확인

- 초기 대응상황 파악

위해정보 수집·분석

• 원안위에 관련 정보 확인

상황접수 및 보고

• 관련 정보 및 동향 지속 모니터링

- 필요시 상황점검회의 개최 요청

• 원안위로부터 비상 발령 확인

• (필요시) 상황점검회의 결과 보고

• 원안위와 연락체계 유지 및 점검

*방사선비상 종류. 사고 상황. 주요 대응조치 등

• 위기경보 발령시스템(START-공지, SMS)를

통해 비상발령 및 지시사항 등 신속 공유

- 과장 →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처·차장

소비자 위해예방 국장

상황점검회의 주재

-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조치방안 검토
- 대국민 홍보방법 및 시기 검토(원안위 협의)
- 관련기관 보고·협조
- 원안위 요청시 파견자 검토(사무관 1인)
- 관련부서
- (농축수산물안전과) 농·수·축산물 생산현황 파악, 검체채취 장비현황 등 검토
- (식품안전관리과) 식품 제조·기공업체 현황 파악
- (**식중독예방과**) 집단급식소 현황 파악
- (소통협력과)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 검토
- (대변인실)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및 여론동향 파악
- (평가원) 방사능 독성자료 등 위해평가 자료 및 시험법 검토

- 원안위 등에 원전고장 관련 정보 확인
- * 원전고장에 대한 조치현황 및 방사능누출 가능성 여부 등 확인
- 위해정보 분석내용 내부 보고 및 전파
- 초기정보 확인 및 추가상황 파악
- 긴급대응회의 준비 및 소집
- * 참석범위 등 조정
- 원안위 동향 및 부서별 조치현황 등 일일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긴급대용회의 주재

- 차장(필요시 처장) 주재
- 위기수준 고려하여 대응방향 결정
- '워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운영 결정
- 긴급대응회의 결과에 따라 일일상황 보고체계 구축 지시
- 처·차장에게 원안위 동향 및 부서별 조치현황 등 일일상황 보고
- (**농축수산물안전과**) 농수축산물 생산 현황 파악. 검체채취 장비현황 등 검토
- ●(식품안전관리과) 식품 제조·가공업체 현황 파악
- (**식중독예방과**) 집단급식소 현황 파악
- ●(소통협력과)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 검토
- (대변인실) 언론매체 취재동향 관찰 및 여론동향 파악
- (평가원) 방사능 독성자료 등 위해평가 자료 및 시험법 검토
- (지방청) 농축수산물 재배현황 및 가공 식품 제조업체 현황 파악 협조. 지자체 대응현황 정보수집 보고

적색 비상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운영

수습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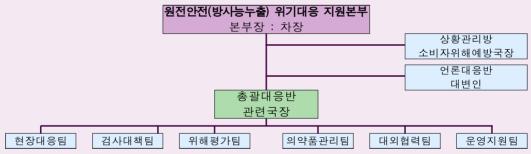
- 원안위 등에 원전사고 관련 정보 확인
- 방사선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
- * 방사선비상 종류, 사고상황, 주요 대응조치, 중앙부처 연락관 파견 요청 등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구성·운영
- 일일상황보고체계 구축
 - 위기 종결 시까지 '일일 지원본부 회의' 개최
 - 전체 일일상황보고서 작성(각 팀별 당일 16:00까지 작성)
 - * 당일 조치사항, 주요 부처·여론·제외국 등 동향, 향후 조치계획
- 청와대·국조실·국회 업무보고 및 대응
- 처·차장 지시사항 관리

'원전안전(방사늉누출) 위기대용 지원본부' 총괄·지휘

- 본부장 : 차장(필요시 처장)
-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회의 주재
- 일일상황보고 내용 확인. 조치사항 검토
- 관련 부처간 협조 요청

- •국민 안심 차원의 이미지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소비자포럼, 세미나 등 개최
 - 외부 전문가 활용한 적극적 의견 개진 및 여론형성 주도
 - 내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가동
 - 사후 심포지엄 개최 및 결과 홍보
- 위기대응능력 향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연구 활성화 지원
- 사고상황 분석 및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재발방지대책 강구
- 위기대응 매뉴얼 수정·보완
- 위기상황 종료 후 백서 발간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용 지원본부



- (상황관리반) 방사능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사항 접수 및 전파, 대국민 소통메시지 마련·전파
- (언론대응반) 언론 및 여론동향 파악, 보도자료 배포
- (현장대응팀) 사고발생 지역 식품 등에 대한 섭취제한. 유통·소비 통제 시행. 수거·검사 및 회수·압류·폐기 총괄
- (검사대책팀)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기관 업무 조정·관리
- (위해평가팀) 검사결과 분석·확인 및 위해평가, 시험검사기관 대상 검사법 교육 등 기술지원
- (의약품관리팀) 방사선 방호약품 국내생산 및 수입현황 확인, 공급절차 간소화, 사용정보 제공 등
- (대외협력팀) 국내 관련부처 및 제외국 정부기관 등 협력업무, 관련법령 검토 및 제도개선 등 법제업무 지원
- (운영지원팀) 위기대응 지원업무 총괄, 시설·인력·물자 지원
- (지방청·지자체) 사고발생 인근지역의 농·축·수산물 피해현황 확인. 수거·검사 및 부적합식품 회수·압류·폐기 지원

Ⅲ 관련 부서·부처별 협업기능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② 피해자 등 지원	③ 긴급 통신지원
주관부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연계부처	행안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복지부, 행안부 등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재난 사고수습활동 총괄 조정> 중앙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	< 주민보호조치 지원 등> •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	<재난현장 사고대응기관 간 비상정보통신체계 운영> • 재난상황정보시스템 정상
주요 업무	지휘센터 발족·운영 유관기관 초기 비상대응조직 발족 및 상황 관리 지시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학생 등 주민보호조치 권고 언론사 인터뷰, 기자회견 등 언론대응 총괄,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혼란 대응 사고지역 비상의료 지원단 구성 • 운영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 대책 강구· 시행	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	가동 점검 방재유관기관간 영상회의 시설 점검 및 이동형 설비 지원 헬기, 차량 등을 이용

기능	⑦ 교통대책	⑧ 의료 서비스	⑨ 사고현장 수습	⑩ 자원봉사관리
주관부서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중앙방시 능 방재대책본부	중앙방시능 방재대책본부
연계부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경청, 국방부 등	복지부, 국방부 등	국방부 등	행안부 등
주요 업무	<재난발생지역 교통대책> ○ 사고수습 인력·장비 및 재난지역 주민 수송을 위한 차량, 선박 지원 ○ 주변 도로·해상·공중에 대한 교통 소통 지원 및 통제	<방사능피폭 의료 지원 등>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응급처치 및 이송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및 응급의료자원 지원 이재민 심리안정화 및 생활안정화 대책 강구	 ✓재난지역 제염조치 등 > ○ 재난지역 피해조사 및 특성 등 확인 ○ 재난지역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및 장비 동원 ○ 재난복구지역 설정 및 피해 예상지역 주민 출입제한, 교통통제 조치 시행 	< 자원봉사자 관리 등> ○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배치 ○ 민간자원봉사 장비· 인력 지원 요청 및 관리

④ 시설응급복구	⑥ 재난자원 지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소방청, 국방부 등
<피해시설 응급복구>	<재난자원 지원 총괄·조정>
 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실시 및 비상연락망자체 점검 사고영향 평가를 통한 사고진행상황 예측 분석작업 시설 필수안전기능 확보에 필요한비상전원설비 등에 대한 관계기관협조요청 	 복구활동에 필요한 중장비 지원요청(지자체 및 지역사단, 국토부 등 관련부서) 사고수습에 필요한 비상조직 가동 및 필수요원 확보(필수요원 외 종사자는 사고위험 외부구역으로 대피조치) 사고현장 수습을 위한 민·관·군 선박 동원, 장비·인력 배분 총괄 조정 구조헬기, 차량 등 지원

⑪ 사회질서유지	⑫ 수색,구조.구급	⑬ 재난수습홍보
중앙방사 능 방재대책본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경찰청 등	소빙청, 해경청, 국방부 등	문체부, 방통위 등
<교통통제, 현장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등> ○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차량통제, 현장 치안예방 활동 ○ 사상자 긴급 후송차량 이동지원	< 구조·구급 활동 등> ○ 소개지역 잔류인원 수색・ 구조·구급 ○ 사고지역 선박 운항 통제 및 항행경보방송 등 안전조치 ○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유관기관 협조사항 파악 및 응급조치 협력	 <재난관련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 ○ 언론기관 보도문 작성 및 기자회견 ○ 사고상황 및 주민행동요령 보도자료 수시 배포 ○ 24시간 상담창구 등 대국민 언론대응 창구 운영 및 유언비어 확산 방지 ※ 의학원, 전문기관 등 전문기관의 실시간 민원대응창구 운영 ○ 언론 인터뷰·취재 및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언론대응전문팀 및 단일 창구를 통해 전담, 정보혼선 방지

Ⅳ 관계기관 주요 임무(국내원전 방사능누출)

부 처	초기 대응 단계 • 예비현장 지휘센터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시	중대본 운영 • 현장지휘센터 방사선 청색 • 적색비상 발령시	수습·복구단계
원 자력 안전 위 원 회	비상발령보고 및 상황전파, 대책회의 개최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및 예비현장지휘센터발족 • 운영 유관기관 초기 비상대응조직 발족및 상황관리 지시 위기징후 변화양상모니터링, 연합정보센터대응활동 지원 IAEA 조기통보 및인접국 통보 현장지휘센터 파견요원건 급이송 헬기지원 "준비"요청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 ● 운영 ● 비상상황 대응 총괄 조정, 현장 대응활동 지휘 ● 통제 ●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협조 요청, 연합정보센터 운영 언론대응 일원화, 재난방송 및 재난문자 요청 ● 긴급 주민보호조치(대피・소개・음식물섭취제한・ 감상선방호약품 복용 등) ● 육・해・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방사선비상진료소 운영 ● 방사능재난 발생 선포・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IAEA 조기통보 및 인접국 통보, 정보제공 재난홈페이지 개설 ■ 장기 상황 관리방안 수립 등	사고의 수습 및 복구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합동조사위원회 설치 방사능재난 상황 조사 재난조사, 피해보상대책, 국가 차원의 방사능재난 사후대책 보고 외국의 사고 수습 및 복구기술 지원요청(필요시) 원자력시설 및 비상계획 구역 내 복구 완료시 수습 및 복구완료 선언 지자체,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복귀 여부를 결정 주민복귀를 위한 상황 정보 수집 및 평가
국가안보실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재난상황 총괄관리 및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가동	▪재난상황 총괄관리 및 후속 대응반 운영
대통령 비서실	■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후속대응 및 복구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후속대응 및 복구
행정안전부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 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방사능지원본부 운영 (필요시) 재난온라인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 지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현장 파견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요구사항수렴 피해지역 인력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 	 상황 모니터링 강화 피해지역 인력, 장비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 방사능 오염피해 공동 조사 참여

국방부	■ 현장방사능방재지휘 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주민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군, 예비군) 및 장비 지원 방사능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교육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구호시설(학교) 지정 및 운영 관련 협조 · 지원 피해예상지역 학생 대피 관련 협조 · 지원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학사 일정 조정 학교 · 연구기관 등의 언론대응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보건복지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현장 응급의료 지원 (필요시) 지역 안정화를 위한 지역 주민 심리 개입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현장 파견 	▪지역주민 및 대국민 심리안정화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 원회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원전 사고시 원자력연구 기관 활용 인력・장비 및 상황분석 지원 ● 유언비어 차단, 언론 홍보활동 지원 ● 국내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 원자력연구기관 운영 연구용원자로 복구 지원	■ 유언비어 차단, 언론 홍보활동 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 • 관리 준비 •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호 조치 •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의 방사능오염에 관한 통제	
해양수산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생산(유통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 항만 방사능오염 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 어항 및 수산시설 보호 ■ 피해지역 생산 수산물 (유통전)에 대한 방사능 오염 관리・검사 및 출하 제한	

환경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관리・검사 준비 ● 방사능오염에 의한 급수 중단 대비 비상급수체계 확보 ■ 환경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관리・검사 실시
국토교통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위기대응 관련 중장비 지원 해당지역 항공기 운항통제 준비 오염제거를 위한 중장비 지원 필요시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공항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피해지역 항공기 운항 제한 실시
산업통상 자원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원전시설 복구 지원 (소외전원 복구 관련 한전 지원 포함) 전력 수급 지원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언론대응 활동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혼란 대응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발생 내용 발표지원 언론인터뷰가이드 제공 등 언론대응활동 지원
외교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 교환 국내 외국대사관에 대한 사고 상황 통보 외국의 지원협조에 대한 정부대응창구 운영
기획재정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사고수습에 필요한 특별 예산 지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유통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 피해지역의 유통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 리・검사 및 출하 제한

경찰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 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특이상황 감시 및 치안 유지 주민소개시 교통통제 및 방사능오염지역 출입통제실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기상청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정보 제공 • 공중방사능 탐사 지원 (항공기 등)	
해 양경 찰청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해당지역 어로행위 및 선박운항 통제 해양방사능 탐사 지원 (경비정 등)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대응활동 지원 특수구조대(해경) 가동 긴급구조(필요시) 등 	
소방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 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공중방사능 탐사 헬기지원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대응활동 지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지방자치단체	■ 지역방사능방재대책 본부 발족 • 운영 ■ 비상상황 접수 및 관계기관 통보 ■ 비상상황 모니터링 강화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확대 운영 ● 주민보호조치 준비 점검및 시행(수송수단 확보,대피・소개, 갑상선방호약품배포 등) ● 유관기관 협조 요청(주민소개시 교통통제, 오염지역 출입통제, 긴급 구조구난, 의료지원,인명구조 및 후송 등) ● 이재민 수용 및 구호,피해접수센터 운영	• 재난지역 중장기 방사능 영향 평가 • 중장기 피해복구계획 수립 (시행계획, 실시계획) • 주민복귀를 위한 실시계획 수립 • 사후대책 수립

Ⅴ 비상연락망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기관(부서)	직 위	연 락 처
소비자위해예방국	국 장	043-719-1701
	과 장	043-719-1711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사무관	043-719-1718
	주무관	043-719-1723

□ 관련 기관

기 관	부 서 연 락 처		fax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5	02-770-4887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044-200-2218	044-200-2225
77465	안전환경정책관	044-200-2348	044-200-2367
	방재환경과	02-397-7352, 7359	02-397-7362
	원자력안전과	02-397-7287, 7288	02-397-7292
	월성현장방재센터	054-740-3605,3627 (0‡)054-740-3653~4	054-740-3610
원자력안전	영광현장방재센터	061-350-3605,3627 (0‡)061-350-3653~4	061-350-3610
위원회	울진현장방재센터	054-780-3605,3627 (0‡)054-780-3653~4	054-780-3610
	고리현장방재센터	051-720-3605,3607,3627 (0‡)051-720-3653	051-720-3610
	대전현장방재센터	042-612-3605~7 (0‡)042-612-3605	042-612-3610
방 송통 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9	02-2110-0136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044-215-7431	044-215-8193
과학기술정보	비상안전기획관실	02-2110-2167	02-2110-0278
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02-2110-2465	02-2110-0296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5, 6893	044-203-6971
외교부	원자력외교담당관실	02-2100-8437	02-2100-8498

기 관		부 서	연 락 처	fax
	χ.	배난관리지원과	02-748-5768	02-748-5778
국방부		합참화생방과 「기통제실(야)	02-748-3285 02-748-0305	02-796-0369 02-748-0544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	02-2008-6119, 6314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장	044-205-1500	
		상황담당관	044-205-1540	
행정안전부	상황 근무자	상황담당관실 (사회재난)	044-205-1541	044-205-8894
86667		상황담당관실 (자연재난팀장)	044-205-1542	044-205-8890
		상황담당관실 (자연재난팀원)	044-205-1543	
	훋	한경재난대응과	044-205-6176~7	044-205-8947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과	044-203-2918	044-203-3483
농림축산식품부	<mark>√품부</mark>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83	044-868-0461
산업통상자원부	Ç T	 원전산업관리과	044-203-5338	044-203-4768
선합증정시전구		종합상황실	044-203-4002~5	044-203-4790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주간) 당직실(야간)		044-202-2654 044-202-2118	044-202-3989 044-202-3910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26	044-201-7130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02-2100-6047	02-2100-6480
국토교통부	Ī	고통정책조정과	044-201-3793	044-201-5579
해양수산부	4	ll양환경정책과	044-200-5287,5288	044-200-5299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비	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3	043-719-1710
거차차		위기관리센터	02-3150-1641	02-3150-2661
경찰청	7		02-3150-1234	02-3150-3657~8
기사처		예보정책과	02-2181-0493, 0502	02-847-4419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02-2181-0674~5	02-836-6755
해양경찰청	<mark>발청</mark> 경비과		044-205-2441	044-205-8988
소방청		19구조과(주간) 종합상황실(야간)	044-205-7625 044-205-1(~6)119	044-205-8986 044-205-8877

VII. 부록

방사선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 정의

○ 방사선비상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비상명칭은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류	내 용
백색 비상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필요 없음)
청색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부지 내에
비상	국한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적색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부지 밖까지
비상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시행)

- 방사능재난 :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 원자력시설 :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핵물질 사용시설 등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시설

□ 방사선비상 상황을 알리는 방법

- 방사선 청색 또는 적색비상 발령 시, 경보방송망, 텔레비전, 라디오, 차량가두방송,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등을 통해 방사선비상 상황 알림
 - * 백색비상 때에는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가능성이 없으므로 경보망 등을 통한 주민 상황통보는 없으며, 언론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 방사선비상 상황시 행동요령

구분	행동요령
기업 공공기관 학교	 방사선 비상 시 각 기관 비상대응요원(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에어콘이나 환풍기 정지 전화 또는 인터넷이 불통되어도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실내에서 TV·라디오를 시청하여 비상시 행동 요령을 확인하고 전달되는 지시에 따름
가정	 〈실내 대피 통보를 받은 경우〉 외출중일 때는 즉시 귀가하거나 가까운 공공기관으로 이동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에어컨과 환풍기 정지 장독이나 우물 등은 뚜껑을 닫음. 음식물은 랩을 씌우거나 밀봉 손발과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음 * 오염지역을 지나온 경우 입었던 옷과 신발은 비닐에 싸서 밀봉 전화 또는 인터넷이 불통되어도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실내에서 TV·라디오를 시청하여 비상시 행동 요령을 확인하고 전달되는 지시에 따름 〈안전지역(구호소) 대피(소개) 통보를 받은 경우〉 외출중일 때는 즉시 귀가하거나 가까운 공공기관으로 이동 준비물: 갈아입을 옷 약간, 휴대폰(충전기), 평소 먹는 약 등 필수품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수도를 잠금 장독이나 우물 등은 뚜껑을 닫고 음식물은 랩을 씌우거나 밀봉 가축이나 애완동물은 우리에 가둔 후 충분한 먹이를 줌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대피완료 표시(출입문에 흰수건) 마을별로 지정된 집결지로 걸어서 이동(지자체 비상요원, 마을 이장 등의 안내에 따름) 지자체 비상요원의 안내에 따라 제공차량 등으로 구호소로 이동 구호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이재민 등록

□ 유의사항

- 방사선비상은 방사선 영향이 국민들에게 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령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질서 있게 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 여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 같은 방사선비상 상황이라도 원자력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u>안전취약계층</u> 시설은 청색비상이 발령 되면 지자체의 별도 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구호소에서는 이재민 등록을 통해 가족과 연락하고 만날 수 있으므로 학교, 병원, 직장에 있는 가족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 비상시에는 통화량이 폭증하여 휴대전화 등이 불통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실내나 구호소에서 TV와 라디오를 시청하세요.
- 구호소에서는 음식물과 잠자리, 기본적인 생필품이 제공됩니다.
- 갑상선보호약품(KI)의 분배와 복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시 합니다.(임의복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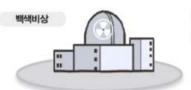
□ 주민보호조치 시행방법 개요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 청색비상(또는 적색비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 원자력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설치한 사업자경보망을 통해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원전 중심 반경 3~5km)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통보하고,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민방위 경보망, 가두방송, 직접방문, 이·통장을 통한 전달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통보하며,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하여 TV·라디오 등으로 알려드리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휴대폰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전송합니다.
-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주민보호조치가 수행됩니다.
 - 방사능영향이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선비상 상황인 적색비상이 발령되면, 방사성물질 방출 이전에 예방적 보호조치구역(3~5km) 내의 주민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즉시 구호소로 소개하게 되며,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원전 중심 반경 20~30km)은 풍향, 풍속, 강수량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소개, 옥내대피 등 적절한 주민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되고,
- 방사성물질이 시설 외부로 방출된 이후에는 환경감시결과를 반영하여 방사능영향이 미치기 전에 주민보호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민소개를 지시하게 되면, 소개 대상 주민은 마을 주변 집결지에 집결한 후 지방자치단체 방사능방재요원의 안내에 따라 미리 준비된 구호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 집결지는 통상 마을회관, 기차역,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 마을 주민 누구나 알고 있고, 버스 등 교통수단이 정차할 수 있는 곳으로 관할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 구호소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들이 방사능 영향(방사능 구름)을 피해 2~7일 정도 생활하기에 필요한 전기, 수도, 취사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었거나 즉시 갖출 수 있는 실내인 각 급 학교, 체육관, 강당 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호소의 선정, 물품 보급, 급식 방법 등 구호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해 지역적 특성과 지자체의 사정 등에 따라 최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색·청색·적색비상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백색, 청색, 정색비상으로 구분합니다.



박사선 영향이 원자로건물 내부에 구하된 것으로 예상



백색비상 시 행동요령 및 대응

행동요령

정부 대응

지자체 대응

- 평상시와 같이 생활
- 예비현장지휘센터 발족 운영
- 언론 등을 통해





밤사선 영향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청색비상 시 행동요령 및 대응

행동요령

-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피준비
- 정부 대응 • 중앙방사능방재
- 대책본부 발족 운영
- 현장방사능방재

지지체 대응

• 주민보호조치 준비

지휘센터 발족 운영

적색비상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발전소 부지 박으로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

적색비상 시 행동요령 및 대응

해포요력

• 지자체 방재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대피합니다.

- 정부 대응 • 주민보호조치 결정
- 원전 비상대응 및 사고 수습 통제
- 지자체 대응 • 주민보호조치
- 실해

방사선비상 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백색비상일 경우 지자체에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고, 청색・적색 비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km)

| 사업자 | 사업자 경보망을 통해 상황 방송

| 지자체 | 민방위 경보망, 기두방송, 직접방문, 아동장을 통한 전달, 전화 | 정 부 | 긴급재난방송(TV, 라디오등) 및 긴급재난문자 전송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20~30km)

|지자체 | 민방위 경보망, 기두방송, 직접방문, 아롱장을 통한 전달, 전화 |정부|긴급재난방송(TV, 라디오등) 및 긴급재난문자 전송

방사선비상 발생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원전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경로는 바람의 방향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공식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피 준비 ①

방사능 오염을 막으려면, 외부 공기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피 준비 ②

화재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대피 준비 ③

음식물과 잠자리, 식수 등 기본적인 생필품은 구호소에서 제공하므로, 평소 먹는 약품, 갈아입을 옷 약간, 휴대전화 등 개인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만 챙깁니다.



대피 준비 ④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지낼 수 있도록 물과 먹이를 갖추어 주세요.



대피 안내를 받으면

마을 주변 집결지로 이동한 후,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이용, 질서 있게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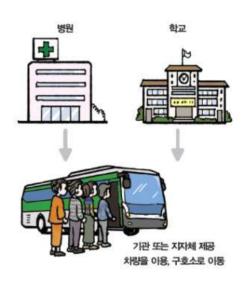
지지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 1차 집결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안부는 구호소에서

학교, 공공기관, 병원 등에서는 각 기관 또는 지자체 차량으로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직접 찾으러 가지 않아도 구호소에서 가족을 만나거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리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월성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한빛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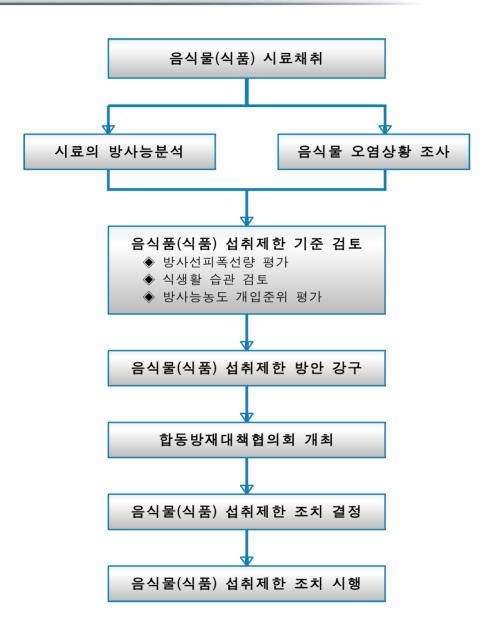


한울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 주민보호 및 구호조치

1 음식물(식품) 섭취 제한



1 음식물(식품) 오염상황 조사

- 합동방사선감시센터는 음식물 시료에 대한 방사능분석을 실시하여, 음식물 오염상황을 조사
- 방사능농도 분석결과로부터 주민이 음식물섭취로 인하여 받는 방사선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령 상의 기준과 비교
- 방사선피폭선량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중요 음식물섭취 경로별로 식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운영개입준위를 재평가
-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방안들을 조합하여 운영개입준위를 평가하고 적절한 음식물섭취제한 방안을 강구

2 음식물(식품) 섭취제한 조치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은 음식물의 방사능 오염 상황을 조사하여 방사능오염을 확인하고, 합동방사능방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음식물 섭취제한 조치를 결정
- 방사능오염 확산 및 음식물섭취 제한 방안
 - 오염된 음식물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
 - 오염된 음식물을 가공 처리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
 - 가축사료로 공급하는 방법
 - 폐기처분
-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제한조치
 - 오염된 식품은 폐기처분
 - 오염된 식품과 오염되지 않은 식품과의 혼합을 방지
 - 오염정도가 낮거나 단반감기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감쇄 또는 처리 후 사용
 - 오염된 음식물의 판매 및 가공처리를 방지

- 오염된 음료수의 처리방법
 - 허용치 이상으로 오염된 식수원은 사용 봉쇄 조치
 - 오염 정도가 낮거나 단반감기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감쇄 또는 처리 후 사용

■ 오염된 우유의 처리방법

- 오염지역에 방목된 젖소의 우유는 잔존 방사능농도에 따라서 적당한 처리과정을 거쳐 치즈 등 가공식품으로 처리하여 보관 또는 폐기

■ 오염된 농축산물 및 가축사료

- 단반감기 핵종으로 오염된 식품, 가축사료는 일시 저장 후에 사용
- 장반감기 핵종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 폐기
- 목초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경우 가축을 안전지대로 이동시 키고 오염되지 않은 사료를 공급
- 지역본부장은 주민생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대체 음식물 확보 및 비상급수 공급체계 등의 장단기 대책을 수립·운영
- 음식물의 섭취제한 기준

방사성 핵종		육류,어류,곡물 (Bq/kg)	야채, 과일 (Bq/kg)	물, 우유 (Bq/L)	유아식품 (Bq/kg)
1군	¹³⁴ Cs, ¹³⁷ Cs, ¹⁰³ Ru, ¹⁰⁶ Ru, ⁸⁹ Sr	2,000	1,000	200	100
2군	¹³¹ I, ⁹⁰ Sr	1,000	500	100	10
3군	²³⁵ U, ²³⁸ U	100	100	20	10
4군	²⁴¹ Am, ²³⁸ Pu, ²³⁹ Pu, ²⁴⁰ Pu, ²⁴² Pu	10	10	10	1
5군	³ H			100 kBq/L	

※ 근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3 방사능 오염물질 폐기물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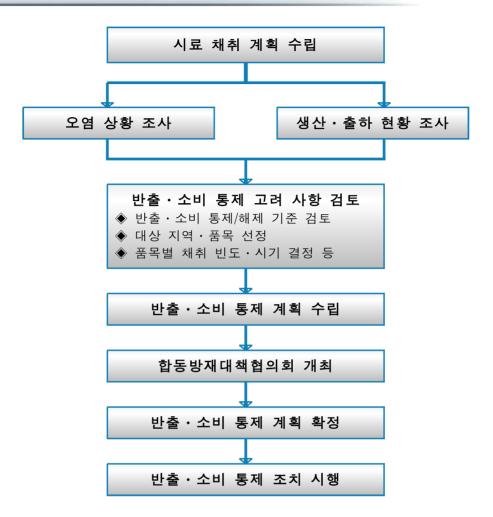
■ 기체 및 액체 폐기물은 필터 등을 통해 여과하여 처리하고, 고체 폐기물은 방사능(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분

< 방사능 폐기물 처분 방식 >

뷴	분 류 정 의		처분 가능
심층 지하 깊은곳에 천연 또는 공학적 방벽		모든 준위	
	동굴	지하 동굴 또는 암반에 천연 또는 공학적 방벽	중·저·극저 준위
천 층	표층	층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 및 공학적 방벽 저·극저 준	
	매립형	지표면과 가까이에 천연방벽	극저 준위

^{*} 방사능 폐기물 분류(Bq/kg, 세슘기준): 극저준위(100<x<10⁴), 저준위(10⁴<x<1.1×10⁹), 중 준위(>1.1×10⁹)

2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 방사선평가반은 합동방사선감시센터의 환경탐사 결과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등을 통해 식료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오염 정도를 예측하고 오염 검사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을 선정
- 검사 대상 지역은 음식물 섭취제한 조치 구역을 우선적으로 하되 토양 중의 방사성 세슘 및 방사성 요오드의 농도, 환경감시 결과를 갂안하여 선정
- 검사 빈도 및 품목의 선정시에는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의 반감기, 품목별 오염 경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검사 빈도는 품목의 생산·출하 현황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대표 품목을 설정하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품목에 대해 재검사를 추진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은 오염검사 결과 반출·소비 통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합동방사능방재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반출·소비 통제 조치를 시행. 다만, 오염검사 결과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시료 채취 빈도 등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섭취제한 및 소비·통제 조치를 지시
- 지역본부장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반출 또는 소비 통제를 실시
- 식료품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방법
 - 오염된 식료품은 폐기
 - 오염된 식료품의 판매 및 가공처리를 방지
 - 오염되지 않은 식료품과의 혼합을 방지
- 음료품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방법
 - 오염된 식수원은 봉쇄 조치
- 오염지역에서 방목 또는 오염된 사료를 사용한 젖소에서 생산된 우연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방법
 - 잔존 방사능농도가 결정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치즈 등 다른 식품으로 가공하여 보관 후 재검사
 - 잔존 방사능농도가 결정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폐기
- 농·축산물 및 가축 사료의 반출 또는 소비 통제 방법
 - 반감기가 짧은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 오염된 농·축산물은 일시 저장하고 재검사
 - 반감기가 긴 핵종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폐기

■ 반출 또는 소비 통제 기준

- 「식품위생법」에 따른 방사능 기준 적용

방사성 핵종	식료품과 음료품	기준(Bq/kg)
131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00 이하
	유 및 유가공품	100 이하
	기타 식품*	300 이하
¹³⁴ Cs + ¹³⁷ Cs	모든식품	370** 이하

- * 기타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유 및 유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세슘) 기준강화를 위한 임시 특별조치'에 따라 100이하 기준 적용('1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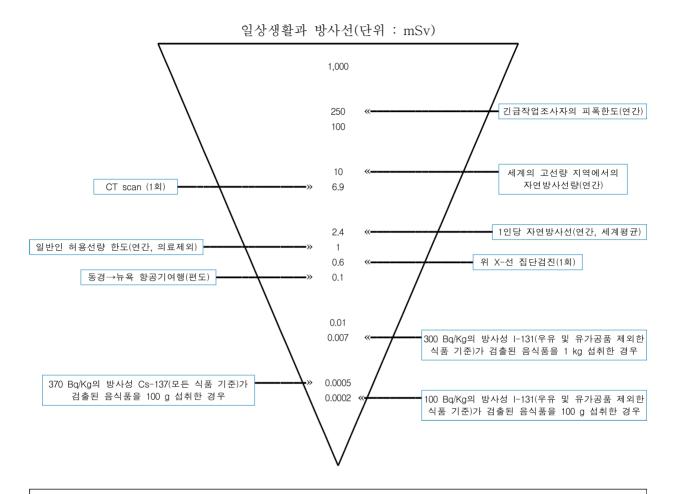
- 그 외 방사성 핵종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 적용

방사성 핵종		식료품과 음료품			노 ᄎ ᄉᄮᄆ
		야채, 과일 (Bq/kg)	물, 우유 (Bq/L)	유아식품 (Bq/kg)	농·축·수산물 (Bq/kg)
1군	¹⁰³ Ru, ¹⁰⁶ Ru, ⁸⁹ Sr	1,000	200	100	2,000
2군	⁹⁰ Sr	500	100	10	1,000
3군	²³⁵ U, ²³⁸ U	100	20	10	100
4군	²⁴¹ Am, ²³⁸ Pu, ²³⁹ Pu, ²⁴⁰ Pu, ²⁴² Pu	10	10	1	10
5군	³ H		100 kBq/L		

※ 근거:「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3 방사능에 대한 Q&A (예시)

1. 일상생활에서의 방사능 노출정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 세슘이 370 Bq/kg 오염된 식품을 1 kg 섭취할 때 성인이 받는 방사선량은 약 0.0048 mSv이며, X-선 진단검진(1회)을 받는 영향의 1/125 수준
- 연간 섭취하는 총 식품 578 kg(국민건강통계, 2014년)이 370 Bq/kg으로 오염된 경우에 받는 방사선량은 약 2.77 mSv로 1회 CT촬영(6.9 mSV) 보다 낮은 수준임

- 2. 방사능(방사성) 물질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 물질은?
 - "방사능 (핵종)물질(放射能物質)"은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원자핵으로 우라늄(²³⁵U)을 비롯하여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중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세슘(¹³⁴Cs, ¹³⁷Cs), 요오드(¹³¹I)에 대하여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특 성	핵 종	반 감 기
	²³⁵ U	7 × 10 ⁸ 년
	²³⁸ Pu	87.7년
α선 방출	²³⁹ Pu	2.4 × 10 ⁴ 년
	²⁴⁰ Pu	6,540년
	²⁴¹ Am	432년
	³ H	12.4년
	¹⁴ C	5,730년
	³⁵ S	87.3일
β선 방출	⁸⁹ Sr	50.5일
	⁹⁰ Sr	29.1년
	⁹⁹ Tc	2.1 × 10 ⁵ 년
	129	1.6 × 10 ⁷ 년
	⁶⁰ Co	5.3년
	¹⁰³ Ru	39.3일
	¹⁰⁶ Ru	1년
4J HI 5	131	8일
γ선 방출	¹³⁴ Cs	2.1년
	¹³⁷ Cs	30.1년
	¹⁴⁴ Ce	284.9일
	¹⁹² lr	73.8일

※ 반감기 : 원자수가 처음의 반이 되는 시간

※ ¹³⁷Cs의 생물학적 반감기(몸 안으로 들어온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걸 리는 시간): 약 110일

3. 방사능(방사성)과 방사선의 차이는 무엇인가?

- 방사능은 방사능(방사성)물질의 원자핵이 단위시간당 붕괴되는 수를 의미하며, 방사능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로는 Bq(베크렐)을 사용함
- 방사선은 원자핵이 붕괴될 때 방출하는 알파선(α선), 베타선(β선),
 감마선(γ선)과 같은 일종의 공간을 이동하는 에너지로 사람이 방사선을 쬐였을 경우의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측정단위는 Sv(시버트)임

4. 방사능 물질의 식품 오염경로는?

- 원자력 발전소 사고("79년 미국의 TMI, '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로 각종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고 대기로 방출된 물질이 낙진 또는 비를 통해 토양이나 해양을 오염시킴
- 오염된 토양, 해양에서 자란 농·수산물에 흡수 축적된 방사능 물질이 결국 인체에 흡수되어 사람에 영향을 미침

5.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은?

- 방사선은 자연방사선 및 인공방사선 2가지 구분할 수 있음
- 자연방사선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물질로부터 자연적 으로 나오는 것이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에너지가 이에 해당됨
- 인공방사선은 TV나 전자렌지 같은 가전제품, 건강검진에 쓰이는 X-선장치, 암치료장치,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됨

- 6.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 과량의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급성영향(예를 들어 구토, 탈모 등과 같은 신체적 이상, 급성방사선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 급성방사선증후군(Acute Radiation Syndrome; ARS): 전신이 1 Sv이상의 용량에 노출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 ※ 1 Sv = 자연적으로 1년간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약 300배 수준으로 골수 손상과 관련된 용량이며, 소화기계, 심혈관계 등의 다른 장기는 더 높은 용량(약 >10 Sv)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참고로, 체르노빌 사고 이후(초기 2년간 100 mSv 이상 노출자를 대상으로) 오염지역에서 수년간 거주하여 갑상선 암이 유발된 경우는 연간 자연방사선량(2.4 mSv)의 20배 이상 수준임
- 현재 국내 방사능 기준 300 Bq/kg(우유 및 유가공품 제외한 식품)에 적합한 경우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자연방사선량의 1/20 수준이므로 장기적으로 섭취하여도 갑상선 기능 장해 등의 건강 우려는 없음
 - ※ 계산식: 300 Bq/kg × <u>0.05 kg/day × 365 day/year × 2.2 × 10⁻⁵</u> = 0.12mSv (mSv=Sv의 1천분의1)
 - ※ 우리나라 요오드 허용기준: 131 : 100 Bq/kg (유 및 유가공품,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 조제식품)

¹³¹I: 300 Bq/kg (기타식품)

- ※ 선량단량(요오드 2.2 × 10⁻⁵): 방사능 단위인 베크렐로부터 생체 영향 단위인 시버트로 환산하는 계수로 신체에서 평생 방사선 핵종이 반감기를 거치는 동안 장기에 따른 영향, 에너지 흡수형태, 체중, 핵종을 고려한 값 (출처: ICRP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 7.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방사성) 검사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현재 식품 중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항목은 세슘(¹³⁴Cs + ¹³⁷Cs) 및 요오드(¹³¹I) 두가지 항목임

핵 종	대상식품	기준(Bq/kg, L)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100
요오드(¹³¹)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등	100
<u> </u>	유 및 유가공품	100
	기타 식품	300
세슘(¹³⁴ Cs + ¹³⁷ Cs)	모든식품	370*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세슘) 기준강화를 위한 임시 특별조치'에 따라 **100이하 기준 적용**('13.9.9.~)

- 8. 베크렐(Bq)과 시버트(Sv)는 어떻게 다른가요?
 - '베크렐(Bq)'은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국제단위로 베크렐선을 발견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투안 앙리 베크렐'의 이름에서 유래
 - '시버트(Sv)'는 사람이 방사선을 쬐였을 때의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방사능 노출 측정 및 생물학적 영향을 연구한 스웨덴의 유명한 의학 및 물리학자인 '롤프막시밀리안 시버트'의 이름에서 유래
 - 베크렐(Bq)을 시버트(Sv)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물질별로 정해진 (경구)실효선량 계수를 곱하여 구함
 - 예를 들어 방사성 세슘 규격은 370 Bq/kg으로, 370Bq의 식품을 1kg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의 영향은

370 × <u>1.3 × 10⁻⁵</u> = 0.0048 mSv(Sv의 1/1,000)로서 나 방사능 세슘의 실효선량 계수

X-선 진단검진(1회)를 받는 경우의 영향(약 0.6mSv)의 1/125에 해당함

○ 또한, 방사성 요오드 규격은 300 Bq/kg으로 300 Bq의 식품을 1kg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의 영향은

300 × <u>2.2 × 10⁻⁵</u> = 0.0066 mSv으로서 나 방사능 요오드의 실효선량 계수

X-선 진단검진(1회)를 받는 경우의 영향(약 0.6 mSv)의 1/91에 해당함

- 실효선량 계소는 방사능 단위인 베크렐로부터 생체영향 단위인 시버트로 환산하는 계수로 방사능의 종류, 화학형, 섭취경로에 의해 정해집
- 9. 방사선 피폭시 복용하는 의약품은 무엇이며,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방사선 피폭 의약품으로는 방사성 요오드가 더 이상 인체(갑상선)에 축적되는 것을 막는 요오드화칼륨정(KI)과 위장관계에서 세슘을 포획하여 대변으로 배출하는 프루시안블루 캡슐(500mg)이 있음

- 10. 인터넷을 통한 요오드화칼륨정 등을 구입해도 되는지, 그리고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한지?
 -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이들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전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원전에서의 대규모 방사능누출사고 등에 대비하여 요오드화칼륨정을 확보하고 있으며,
 - 주민예상피폭선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원전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 주민에게 요오드화칼륨정을 배포함
- 11. 의약품 대신 미역 등 해조류로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지?
 - 방사선 피폭시 복용하는 요오드화칼륨정은 요오드화칼륨 130 mg(요 오드로서 121.5 mg)을 함유하고 있음
 - 미역 등 해조류에 함유된 요오드의 양은 매우 적어, 방사선 피폭 등에 있어 이를 섭취하는 것은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1. 목표

○ 정부가 위기 시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음

2. 기본 원칙

신속성: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 일관성 : 정부의 메시지는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개방성 :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3. 위기단계별 점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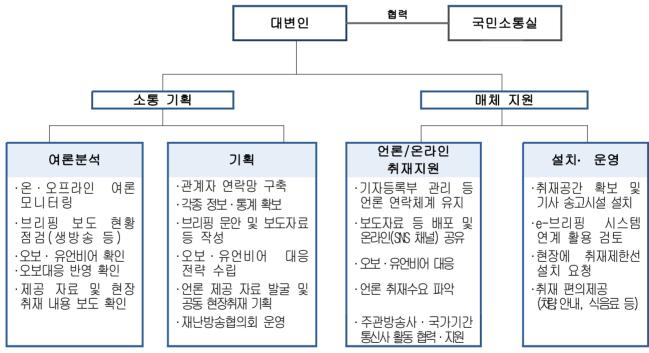
위기단계		점검사항	
위기 전 (pre-crisis)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 피해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 언론사 현황 및 기자 명단 확보 타 부처 위기상황 전파 등 협업가능 SNS 매체 파악 	
		온·오프라인 위기징후 파악 및 상황 분석위기 유형과 단계별 전파가 필요한 콘텐츠 점검과 준비피해발생 예상 시 예방요령 온라인 홍보 전개	
		 위기관리(본부) 대책 회의 위기 비상체제 가동 여부 결정 위기의 경중에 따라 위기관리본부 설치 여부 결정 응급임무 부여/ 비상근무 개시 	
위기(crisis)	위기발생	여론 모니터링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현황 점검온라인 여론동향 파악 및 SNS 대응현황 점검	
		•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소통센터 구성	

위기	단계	점검사항		
		•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		
		 위기 언론대응 기자 연락 브리핑 준비 및 실시(관계부처 협의) 보도자료 배포 및 재난보도준칙 공유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 설치 요청 주관방송사와 국가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 지원 재난안전 전문가 풀(pool) 공유 등 		
		 위기 온라인 미디어 대응 온라인 매체, 영향력자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 SNS 활용 위기상황 및 행동요령 실시간 전파 공식 브리핑자료 활용 		
		• 홍보 전문 부서(국민소통실)와 협력		
	위기진행	•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		
		•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의)		
		•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가동 및 SNS 활용 정보 공유		
		•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지원		
		•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		
		• 결과 브리핑 - 온·오프라인 전파·확산		
위기 후 (post-crisis)		•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분석 및 평가 - 온·오프라인 여론 분석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		
		 회복 프로그램 상황관리 관련 개선방안 도출 및 세부내용 전파 내부 조직원 결속 프로그램 가동 대외 회복 프로그램 가동 등 세부사항 전파 언론사 및 주요 관계자에게 감사서신 발송 SNS 활용 재발방지 약속 등 대국민 메시지 전파 		

4.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 소통센터 역할

- ㅇ 대변인 지정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 (차관 또는 1급 이상 공무원)
 - 현장 :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 * 각 대변인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복수로 하며 1, 2, 3 순위를 정해 미리 정해둠
- ㅇ 대변인 지위와 역할
 - 대외적으로 유일한 공식 창구
 - 위기관련 모든 회의 참석, 상황을 장악하고 관련기관 간 메시지 조율
 -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홍보 활동 시행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대변인 :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현장 대변인 :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 문체부 소통실 홍보지원 사항

- 홍보협의 위해 현장지휘소-소통수석실-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 유지
- 홍보지원 사항 : △ 초기 메시지 관리, △ 여론 모니터링 및 대응 협조, △ 보유매체 활용 및 범부처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가동 지원, △ 현장 의문사항 컨설팅, △ 필요시 취재지원 인력 파견, △ 취재제한선 조율 등

5.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준

- 가.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브리핑하라
- 위기 시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 첫 발표는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 한다.
 - 확신이 없는 사안은 확인해서 알려주고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감염병 등 진행 중인 위기의 경우 사태 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한다.
 -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숫자 인용 등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한다.
 -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잠정', '몇 시 경', '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은 신중을 기한다.
 - 주관적 판단이 포함된 추측성 답변, 예단하는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답변을 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고 원인,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 등의 표현을 사용 한다.
- 문서로 작성한 발표 자료만 브리핑한다.
 - 초기에 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정리된 자료만을 기초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목소리를 유지하라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 정보는 반드시 공식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시 대변인 승인 하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 ※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상황을 장악
- 정부 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유지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조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 ※ 재난현장 관할 지자체(시·군·구) 홍보담당자를 반드시 포함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삼간다.
 - 다른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한다.
 -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거나 핫라인을 통한다.

다. 언론은 최대한 준비한 뒤 대하라

-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언론 및 온라인(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야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전체 홍보상황을 고려해 핵심 메시지, 정부 입장 등을 발표문으로 준비하고 언론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정리해 둔다.
 - 온라인(소셜미디어) 상에서 생겨나는 각종 루머, 비판, 거짓 정보 등을 초기에 발견·정리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게 해명하여 소멸 시키는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지속적인 공식 해명자료 배포)
- 브리핑 등 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 및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라.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 행동하라

- 위기 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한다.
 - 정부 인사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다.

-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언론 등 제 3자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 해야한다. 특히, 사고와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및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 사람 중심의 시각에서 언론에 설명한다.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며진솔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한다.

마. 언론 및 온라인(소셜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 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언론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 상황이 허락하고 논란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안전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충분한 이해를 구한다.
- 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 공식 브리핑 자료들은 민감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정부 공식 온라인채널을 통해 실시간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정부의 대응상황과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요령을 브리핑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파급력이 높은 매체를 적극 활용하다.

바. 모든 정보를 공식화하라

-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는 지켜지기 어렵고, '노코멘트 (No Comment)'는 문제가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 최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불가피하게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그 사유를 공개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 오보 및 유언비어에는 즉각 대응하라

- 오보가 한번 보도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첫 오보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보가 이어지며, 유언비어는 SNS, 댓글 등을 통해 교차 인용되어 급속히 확산되므로 정확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 및 유언비어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 오보의 경우 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 보도·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에도 해명 글을 게재하며,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필요시 관계자인터뷰 영상, 카드뉴스 등을 적극 활용한다.
 - 명백한 오보임에도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 위기 발생 시에는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기 브리핑, 보도자료,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정부의 해명 메시지들이 충분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 위기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 ㅇ 위기 시 언론이 접촉하는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주요 전문가 및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주요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온라인 네트워크 연락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고 조언을 구한다.

자. 외신 기자 취재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외신에 대한 취재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 브리핑이나 현장 방문 풀(Pool) 구성 시 외신 기자를 포함한다.

차. 국민들의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대응 요령에 대한 메시지를 쉽고 간단하게 제작해 활용하라.

-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주의나 행동지침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메시지나 홍보물은 최대한 간단 명료해야한다.
- 특히 실시간 파급력이 높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와 동영상 형태의 행동요령 콘텐츠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브리핑 및 취재 지원 기준

가. 브리핑 전 사전 리허설을 가져라

언론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나용어 등을 미리 파악해 둔다.

나. 브리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라

기자들의 위기 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다.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 전문용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 사용을 삼가고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브리핑한다.
-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그림, 사진 및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한다.

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라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답변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 번 더 되풀이 한다.

마. 질문에 얽매이지 마라

- 질문이 잘못된 사실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경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확언 요구 등 답변이 곤란한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으로 언급한다.

바. 인터뷰에서는 핵심 중심으로 간략히 말하라

- 방송 인터뷰의 경우 편집되지 않도록 10초 이내로 짧게 답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돌발 인터뷰는 삼간다.
 - 한 번 잘못 언급한 말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사. 위기대응 활동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인사와 자료를 활용하라

○ 현장 지휘책임자, 기관장 등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 부정적 사안이라 할지라도 알려질 사실이라면 숨기지 말고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전후 사정과 맥락을 충분하게 설명한다.

자. 정직이 최우선이다

○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겪손한 태도로 임한다.

차. 미디어 트레이닝을 평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평소에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대응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카. 현장을 질서 있게 관리하라

- 언론의 보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공익과 무관한 자극적·선정적 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 현장에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필요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한다.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풀(Pool) 기자들이 공보담당자의 인솔 하에 현장을 방문, 취재하도록 안내한다.
 - 이재민 임시구호소 등에도 취재제한선을 미리 설치하여 피해자들의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타. 언론을 공평하게 대하라

- 특정 매체에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취재기자 리스트에 근거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현장취재를 나온 기자들은 취재기자 리스트에 누락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등록부를 마련하여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시킨다.

파. 복장은 정복이나 비상근무복을 착용하라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변인이 아닌 경우에도 브리핑, 기자회견 참석자는 이 원칙을 준수한다.

<붙임1>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장소)

- 0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0 현장 대책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 0 충분한 공간(취재진 규모 예상) 확보

(시점)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

(기능)

- 0 수시 상황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 o 언론 상황파악 및 대응
- 0 취재 송고시설 및 행정서비스 지원
- o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취재지원팀의 배치)

- o 언론지원 담당
 - 기자등록부 관리 등 언론연락체계 유지
 - 보도자료 등 배포(이메일, 문자, SNS 등)
 - 언론 요구사항 파악(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및 현장 안내 등)
- o 센터 설치·운영 담당
 - 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시설 설치
- ※ 현장에서 송고시설 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장소 및 시설 확보
- 현장에 취재제한선(폴리스라인/포토라인) 설치 요청
- 공동 현장취재 등 이동용 차량 준비, 취재진 편의 제공
- ※. 구비물품 리스트: 마이크, 백드롭, 책걸상,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TV,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기자 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붙임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작성 탬플릿

메시지 작성 시 필수 고려 사항

타깃 (공중, 오디언스)	메시지의 목적	전달 방법(매체)
위기(사건)에 대한 관여 정도인구통계적 특성피해규모(정도)	진행상황/사실 전달집회/연설 등현재 상황 설명루머대응미디어 응대	- 신문 보도자료 - 홈페이지 게재 - 대변인발표(TV, 현장발표) - 라디오 - 소셜미디어 - 기타(전화 응대 등)

메시지 기본 요소 (사과문, first response)

피해자에 대한 배려

사건개요 (6하 원칙)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구체적)

원상회복 노력 천명

<붙임3> 위기 원인과 유형별 유의 사항

상황	사실(fact)	인식(perception)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현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위기 발생 시 위기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능동적 대처가 필요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예: 공중의 불확실성 감소, 타당성 검증 요구에 적극 대응 및 정보 공개) 위기 前, 위기 中 그리고 위기 後 등 각 단계 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커뮤니케이션 내부 공중, 소속 부서들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한 위기 해법 및 대안 모색 조직 전체가 협력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특히 위기 발생 원인이 정부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 하고 배려하는 대응 필요 신속한 사건 경위 전달 사과 및 책임감 표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전달 관계 개선 노력 이미지 개선 노력 	 위기 발생의 원인이 정부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이 높다고인식되는 경우,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필요 위기를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 돌파 혹은 잘못된 인식을바로 잡으려는 노력 필요 적극적인 정보 공유도 중요. 위기원인공개, 상황 공유 등 잘못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정정 신속한 위기관리팀 구성운영 종합하면,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공유를통한 언론의 오보와 유언비어 및 루머를최소화하고 호의적인 언론보도를이끌어낼수 있어야하며, 공중들의 전폭적인지기를 획득하도록 소통 분야별 전문가 그룹 등과 같이 정확한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방안 모색필요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활동 모색 참여형소통방안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타 주체와 정부의 공동책임 인 경우	 타 주체와의 공동책임인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소통의 전략들 필요. 다만, 그 이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타 주체와의 통일된 커뮤니케이션 필요 단일화 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메시지 통일 위기 단계별 상황에 부응하는 소통 위기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분석 필요 	 발생한 위기가 타 주체와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우, 초기 위기 상황, '정보의 공백기'에서 적극적인 정보공유 필요 불필요한 소문 확산을 막고, 초기 이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위기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필요 평상 시 신뢰감을 확고히 하는 평판관리 필요

5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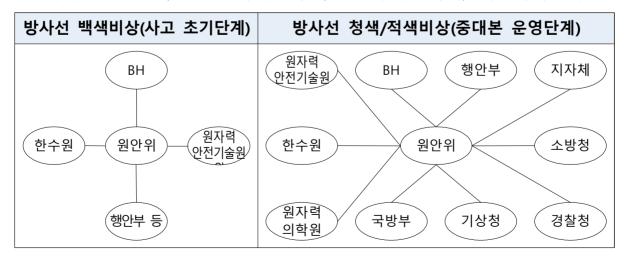
□ 개 요

- (목적) 청와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부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긴급구조기관(소방·해경),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황 공유, 범정부적 신속 대응
- (연결기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279개 기관과 연결

구분	연결기관(279개 기관)
중앙 (26)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18부 ・5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245)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연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8)	•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질병관리본부

□ 영상회의 운영

- (대상회의) 상황판단/대책회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회의 등
- (참여기관) 국가위기관리센터, 원안위(주관기관), 행정안전부,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 지방자치단체 등



※ 재난의 규모 및 대응단계 등에 따라 영상회의 참여기관은 변동 가능

- (참 석 자) 회의 참석대상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판단 ※ 예: 대통령 회의 주재 시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참석 등
- (회의내용) 재난의 규모에 따른 조치방향 및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 (대비태세) 중앙·지역·현장(지역) 지휘·보고체계 구축, 상황파악 및 대응계획 점검, 재난 상황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전파체계 유지
 - (협력·지원체계) 관계기관 재난상황 전파·공유 등 협력체제 가동,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 현황점검 및 동원체제 구축
 - (대응조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구조·지원 세력 지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6 공문서 등 작성(예시)

1. 유통 판매 금지 조치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방사능 오염 유제품 등 유통 판매 금지

- 1. 최근 분유·우유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지고, 분유 등이 함유된 식품에 서 잇따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 2.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된 관련제품을 현재 수거·검사하고 있으므로, 현재 수 거·검사 대상 제품에 대하여는 영업상 사용하거나 제조·가공·유통·진열·판매하는 행위를 '00.00.00.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금지조치하오니,
- 3. 각 시·도 및 지방청에서는 붙임의 ○○개 제품 현황 중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적합 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도록 관할업 소에 별도 보관 및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아울러, 각 협회에서는 회원(비회원 포함)들에게 동 내용을 공지하여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제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 5. 검사결과 적합된 품목은 판매금지를 신속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서울특별시장(식품안전과장), 부산광역시장(식의약품안전과장), 대구광역시장(식품안전과장), 인천광역시장(위생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식품안전과장), 대전광역시장(식품안전과장), 울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사회복지과장), 경기도지사(식품안전과장), 강원도지사(식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식품의약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식품안전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대한제과협회, 한국식품임가공협회,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 한국인삼제품협회, 한국재제염공업협동조합, 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 한국은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부출가공식품임업형동조합, 한국도시학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기최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한국도시략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지체망공업협동조합, 한국지를임시품공업협동조합, 한국지를임시품공업협동조합, 한국지를임점등조합, 한국지를임점등조합, 한국지를임점등조합, 한국지를임점등조합, 한국제빵공업협동조합, 한국지를임업등조합, 한국지를임업형동조합, 한국제항공업협동조합, 한국대를임점회,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휴게음식업증양회, 사단법인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2. 수거 검사 지시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수거・검사 지시

최근 분유를 섭취한 영·유아 환자발생 등 인명피해 사고 보도에 따른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수거·검사를 지시하오니 그 결과를 '00.00.00.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거기관 : 관할 지방식약청(단, 판매처가 타 지방청 관할지역에 소재한 경우 해당 지방 청에 협조 요청)

2. 수거대상 : 분유 및 분유(우유)가 함유된 가공식품

3. 검사항목 : 방사능 물질4. 수거건수 : 제품별 2~3건

5. 수거방법 : 분유 함량이 높은 빵 및 초콜릿류 제품 우선 수거

붙임 1. 분유(우유) 함유 ○○산식품 수입현황(0000.00.00.~00.00)

2. 수거·검사 결과보고(양식). 끝.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 관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식품안전관리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대전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3. 회수 폐기(1)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회수·폐기 실시

- 1. 관련: 00000-○○○호(0000.00.00), ○○○○호(0000.00.00)
- 2. 우리 처에서는 분유 등 유제품 함유 일부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품에 대하여 '○○.○○.○○일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 3. 하지만, 현재 판매금지 제품 중 유통되는 제품이 있어 알려드리니, 각 시·도(시·군·구) 및 지방 청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붙임의 미회수 제품이 '00.00.00.까지 모두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회수 품목현황. 끝.

수 신 각 시도(시군구) 식품위생 담당부서 자

4. 회수 폐기(2)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부적합 식품 압류 및 폐기 조치 지시

- 1. 최근 방사능 누출사고 인근지역 우유의 방사능 물질 검출과 관련하여 국내산 우유 함유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일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지시하니, 신속한 회수·폐기 등 조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 아울러,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조치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입회하는 등 회수·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OO사	(주)○○
소재지	서울시 ○○구 ○○동	부산시 ○○ ○○동
제품명	00	00

수신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안전관리과장)

5.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비상 근무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구성·운영 및 비상근무 실시

-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색비상 발령 통보와 관련하여 식품안전 위기상황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 2.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의 각 반 및 팀에서는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14:00까지 진행상황을 상황관리반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매일 아침 개최되는 일일상 황보고회의에 참석(팀원 중 과장 및 사무관1명 포함)하여 상호 정보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안전 위기상황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전안전(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계획. 끝.

수신자 식약처 본부 및 지방청 전 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 부서 시행 운영지원과-〇〇〇 (0000.00.00.)

6. 관련 기관 협조 요청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방사능 누출사고 인근지역의 방사능 오염 식품 조사 협조 요청

우리 처는 최근 울진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조사를 위한 검체 수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0000.00.00. ~ 별도 지시일까지

2. 장소 : 울진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 수거지역은 원안위에서 선정한 오염검사 대상 지역으로 한정

3. 방법 : 식약처, 농식품부, 지자체 등으로 수거 조 편성(5인/조), 기타 검체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전교육 실시

※ 검체 수거에 필요한 준비물, 개인보호 장비 등은 식약처에서 일괄 준비 예정

수신자 농식품부(소비정책과), 각 시도(시군구) 식품위생 담당부서 연락처. 끝.

시행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0.00.00.00)

7. 관련 업계 협조 요청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방사능 오염 식품 수거에 대한 협조 요청

- 1. 관련: 식품안전관리과-○○○호(0000.00.00)
- 2. 우리 처에서는 분유 등 유제품 함유 일부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품에 대하여 '○○.○○.○○일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를 조치한바 있습니다.
- 3. 하지만, 판매금지 제품 중 일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 등에 연락하여 붙임의 미수거 제품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연락하고 행정기관에서 수거·검사를 위하여 판매장 등에 출입·검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미수거 제품이 전량 수 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미수거품목업체별현황

2. 미수거품목현황. 끝.

수신자 한국식품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8. 교육 홍보 자료 배포

방사능 물질 오염관련 식품 유통 판매 금지에 따른 당부말씀

정부는 방사능 오염식품으로 인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 가능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일부 제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함유 되었음을 확인하고 00월 00일자로 해당식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유통판매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러한 식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판매금지 식품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완료하여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9. 긴급대응회의 결과 보고서 양식

00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적색비상 발령

('00.00.00(O), △△△과 □□□과장, 000-(0000-0000
□ 정책보고 ■ 상황·정보 □ 회의보고 □ 행사보고 ■ 방침 필요 □ 지시사형	항 이행
< 정보내용 >	
○ 일시 : '00.00.000(○) ○ 내용 : 원안위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로부터 적색비상 발령 및 유관부처 건 지시사항 통보	[]급대응

- OO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조사, 식품 섭취제한 조치 등 지시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참석자 :
- □ 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 점검

 \bigcirc

□ 점검회의 결과(향후 계획)

 \bigcirc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또는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나. 유통기한: 0000.00.00일까지

다. 회 수 사 유 : 방사능 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라. 회수방법: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

바. 영업자주소 : ○○도 ○○시 ○○동 ○○번지

사. 연 락 처 : 000-000-0000

아. 기 타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도○○시 ○○과(담당자 ○○○)

11. 수거ㆍ검사 일일 현황보고 양식

수거・검사 일일 현황 보고

기관명 :식약처, 시도

(단위 : 건)

					(,/					
	수거현황	검사결과								
		계	적합	부적합	진행중					
당일										
당일 (○월○일)										
누계										

수거・검사 세부현황

기관명 :식약처, 시도

		제품	정보		수거검사				
연번	제품명	식품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조업소 (식품등 수입판 매업소)		수거일자	검사기관	검사완료 일자	검사결과 (기준)

※ 수거검사 세부현황 자료는 누계자료에 추가 수거된 자료, 추가 검사 완료된 자료를 입력하여 보고

12. 판매 금지 식품 점검표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종류	식품제조업, 식품수입업, 식품소년 접객업, 초등학교주변 판매점, 도소		

구분		점검사항								
판매금지	핀	· 한매금지 식품	등	의 판매	또는 판미	l의 목적으 <u>:</u>	로 채취	·제조 ·		
식품의 취급	4	누입·가공·	사용	• 조리	• 저장 • 윤	는반 또는 <u>전</u>	<u> 1</u> 열 여	부		
		제품명		ے	·입업소	유통기한(제	スのない	보이/게 ㅋ	\라(kg)	
판매금지		711 12 0			日日工	비 6 기 원(기)	그 크시)	0 U(A) A	·) 8 (NS)	
대상 식품별										
재고량										
(필요 시										
별지작성)										
		※ 보관량에	대히	내서는 	판매금지를	를 위한 봉C 	<u> 고</u> 치			
판매금지	Į	판매금지 대성	상 식	품을 다	내량으로 핀	반매한 경우	판매기	서 및 판미]량 조사	
대상 식품의		제품명	수약	 밀업소	유통기한	판매처	소기	내지 판대	매량(kg)	
판매처					.,				(.)	
(필요 시										
별지작성)										
0000		제품명		스	입업소	유통기한(제	スのえい	보관링	:(kg)	
검출제품		게품경			H H 27	मठ∕। ११(∕गः	고 된사)	<u> </u>	(vg)	
압류										
기타	য়	한매금지 품독	무슨	별도의	장소에 5	브관하고 봉	인조치	실시 등		
지도사항										
본인은 상기 저	11 =	푹 보관량에	대하	여 별도	돈의 지시기	나 있을 때 <i>끼</i>	가지 판	매(사용)히	가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	반.	시 어떠한 첫	Ӈ벌도	: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000	0.00.00.					
				확인	자	업소명	직위	의	이름(인)	
				조사	자	소속	직급	그 크	이름(인)	

13. 압류 회수 현황 보고

압류회수 세부현황

기관명 :식약처, 시도

	제품정보				압류・회수					조	조치		
			제조								폐기	방	법
	-J) DZ	제조	업소					到人					용
연번	제품	일자	(식품	회수	명령	명령	완료	회수	화수량	화수율		반	도
	명 / 식	(유통	등수입	영업자	기관	일자	일자	대상	(kg)	(%)	일자	송	전
	품유형	기한)	판매					(kg)				0	환
			업소)										둥

※ 회수폐기 세부현황 자료는 누계자료에 추가 압류·회수된 자료, 추가 조치된 자료를 입력하여 보고

14. 유통 판매 금지 식품 현황

순번	품목명	수입업체	제조회사	유통기한 (제조일자)	관련 사진
1	00000	000	0000	0000.00.00.	
2					
3					
4					
5					
6					
7					
8					
9					
10					

15. 유통판매 금지 제품 수거 검사 현황

(0000.00.00. 00:00현재/식약처)

□ 검사대상 00개 품목 중 검사 완료 00개 품목(검출 00개 품목)

구분	검사대상 총계(A)	수거 품목(B)		검사현황	}	건사중	수거중 (A-B)	
			소계(C)	불검출 (적합)	검출 (부적합)	(B-C)		유통금지
누계								
일계 (00.00)								

소관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연락처

전화) 043-719-1718 043-719-1723 팩스) 043-719-1710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